

碩 士 學 位 論 文

벤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2006年

漢城大學校 디지털中小企業大學院

디지털中小企業經營 專攻

李 相 昊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朱 亨 根

벤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mall & Medium Business Supporting Policy
Systems for Venture Business

위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6月 日

漢城大學校 디지털中小企業大學院

디지털中小企業經營 專攻

李 相 昊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朱 亨 根

李相昊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 함

벤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2006年 6月 日

A Study on Small & Medium Business Supporting Policy
Systems for Venture Business

위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6月 日

漢城大學校 디지털中小企業大學院

디지털中小企業經營 專攻

李 相 昊

審 查 委 員 長 (인)

審 查 委 員 (인)

審 查 委 員 (인)

【목 차】

국 문 초 록	vi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제 2 장 벤처기업의 개념과 현황	3
제 1 절 벤처기업의 개념	3
1. 벤처기업의 정의	3
2. 벤처기업의 특성	6
3. 벤처기업의 경제적 의의	6
제 2 절 벤처비즈니스의 정의	8
1. 벤처비즈니스의 종류	9
2. 벤처비즈니스와 경제발전	10
제 3 절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	12
1. 벤처기업의 현황	12
2. 벤처기업의 성과	14
제 3 장 국·내외 중소·벤처지원제도	20
제 1 절 국내 벤처기업의 지원제도	20
제 2 절 중소·벤처지원제도의 변천	35
1.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변천	35
2.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36
제 3 절 주요국의 벤처기업의 지원제도	37
도	38
2. 일본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53
3. 영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66
참 고 문 헌	76

제 4 장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78
제 1 절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78
1.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특징 및 한계	78
2.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자금동원 능력 부족	79
3. 기술혁신 및 이전기반의 취약	80
제 2 절 벤처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81
1. 창업단계에서의 벤처비즈니스 활성화	81
2. 성장단계에서의 벤처비즈니스 활성화	82
3. 성숙·구조단계에서의 벤처비즈니스 활성화	83
4.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벤처비즈니스 활성화	85
제 5 장 결 론	87
참 고 문 헌	90
ABSTRACT	92

【표 차례】

【표2-1】	외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	4
【표2-2】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5
【표2-3】	유형별 벤처기업 현황	12
【표2-4】	벤처기업의 업종별 현황 분류	12
【표2-5】	벤처기업의 지역별 현황 분류	13
【표2-6】	벤처기업의 현황(월별 증감 현황)	13
【표2-7】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14
【표2-8】	대기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간 경영성과 비교	15
【표2-9】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률	15
【표2-10】	세부 업종별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16
【표2-11】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경영성과	17
【표2-12】	매출액 규모별 벤처기업의 분포	17
【표2-13】	지역별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18
【표2-14】	벤처기업의 매출구조	18
【표2-15】	업종별 벤처기업의 매출구조	19
【표3-1】	창조경제와 벤처기업의 비교	21
【표3-2】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벤처특별법의 내용	22
【표3-3】	벤처기업 감가상각 자회계 지정 현황	24
【표3-4】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33
【표3-5】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36
【표3-6】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40
【표3-7】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 실태	40

【표3-8】	미국 벤처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제도	48
【표3-9】	미국 벤처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제도	50
【표3-10】	일본의 공적 벤처캐피탈 현황	57
【표3-11】	미국과 일본의 벤처캐피탈 투자시기 비교	61
【표3-12】	영국 벤처캐피탈산업의 성장	68
【표3-13】	증권시장별 상장요건	70
【표3-14】	기업 발전단계별 엔젤의 투자현황	71
【표3-15】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벤처기업의 투자현황	72

【그림 차례】

【그림2-1】 모험사업의 수행주체	10
【 그림 31 】 실험실 공장의 벤처기업화 과정	26
2차년도 B] 기업문화 혁신 사례 연구	37

<국문 초록>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 단계에 관한 연구

다자탈중소기업경영연구 이 상 호

근 형 차

최근에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벤처비즈니스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세계 경제활동이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배분 및 이의 활용을 더욱 중요시하는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IMF이후 벤처기업이 등장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벤처비즈니스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와 국외의 벤처비즈니스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종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벤처기업의 현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향후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벤처비즈니스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초기 단계에서의 기본방향 설정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벤처캐피탈의 활성화와 벤처투자 조합의 확대 및 활성화에 있다. 벤처캐피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으로 관련법 및 체제의 일원화, 공적캐피탈의 도입이 필요하며,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연금의 벤처캐피탈 투자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 개인 투자자등 출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되어야 하며, 창투사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하고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사전개입으로 벤처투자조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둘째, 벤처비즈니스의 성장단계에 있어서의 발전방향

성장단계에 있어서는 벤처캐피탈의 고유기능수행 독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확대 건전한 벤처 투자 분위기 등을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자본시장 기반확충, 기술개발과 벤처창업간 연계강화, 입지·인력공급 확충, 국제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본질적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위축되었고 국민경제의 건전화 및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해왔다.

특히 21세기가 도래하면서 지식화, 정보화, 기술화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급변해 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해 가고 있는 기업 환경은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중소기업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라 볼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발전의 주역이라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기능 중심의 분업형 중소기업은 점차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략하는 반면 기술·정보·지식·서비스 집약형 벤처기업들이 산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경제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벤처기업은 높은 수익성과 설비·노동절약적 특성을 보유하며, 아울러 토지절약적 이어서 공장용지문제나 물류비용 대처에 용이하고, 또한 기술·지식을 기반으로 자원 절약적·고부가가치 창출 특성을 보유함으로써 저효율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유망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는 새로운 고용창출을 가져오고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생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은 시장의 집중(Market Concentration)을 완화시키고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비효율적인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져와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 물론 신생기업은 수년 내에 곧 도태되고 다시 창업을 시도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밟고 있으며, 기술혁신에 도전하는 성향이 높아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초기의 위험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벤처기업에 의해 산업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던 미국경제가 오늘날 활력을 되찾고 세계경제를 다시 이끌어 가는 것도 실리콘 벨리를 중심으로 한 벤처산업과 벤처기업들의 활발한 움직임 때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의 활력회복과 21c 지식정보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활성화가 절실하므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미국의 실리콘벨리정책에 자극을 받아 정책적으로

화 역량 지원, 네트워크 형성, 공공구매 지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부처간 연계 조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벤처비즈니스의 성숙단계에 있어서의 발전방향

이를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 기반 확충이 요구되는 성숙단계에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M&A활성화에 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기반 확충이 요구되는 성숙단계에서는 벤처기업가의 꿈이 실현되는 코스닥 시장의 획기적인 발전 유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코스닥 전용 수익증권”의 신설, 코스닥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이로써 건전한 투자 분위기가 저절로 조성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벤처투자회수 시장의 활성화는 코스닥 시장의 계속적인 발전과 형성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M&A를 통한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창업투자회사에 M&A만을 전담하는 “기업 매수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넷째, 벤처기업에 있어서의 경영능력강화

벤처기업의 경영능력 강화는 기술력의 향상과 지식기반의 강화의 측면에서는 대학·연구소 보유첨단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촉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지속적으로 확충, 기술경쟁력 배양을 위한 계획 추진 등을 들 수 있으며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의 측면으로 단기적으로는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 중기적으로는 부품업체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여 독자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판로개척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판로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기업제품 구매 비중을 확대하여 기업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변화하도록 지원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지원 정책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주의 깊게 검토하였으며 침체된 한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적당하고 바람직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육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각 부문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벤처기업으로서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면 정부의 정책방향이 벤처기업의 수나 자금공급 등을 양적으로 인위적으로 되서는 안되고 벤처기업가의 교육지원, 창업절차간소화, 장외시장 활성화, 조세 지원 등 벤처비즈니스의 활성화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벤처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데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진국의 벤처제도와 비교검토 해 봄으로써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무엇보다도 벤처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의 유치가 중요한 전력이 된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육성 실태 분석 및 선진 외국의 벤처기업의 지원정책들을 비교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지원정책의 방향을 올바르게 강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통계조사와 문헌조사 그리고 인터넷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 벤처기업 현황 및 육성정책은 중앙부처의 벤처기업의 관련기관이나 정부기관, 정부출연 연구소, 대학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을 비롯하여 각종 포럼자료를 분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참조하였다.

한편, 벤처기업·벤처캐피탈 개념정의 그리고 외국의 벤처기업육성 정책의 현황과악 및 분석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논문 및 단행본 등을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 문헌조사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벤처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역할정립과, 동시에 벤처기업지원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현행법·제도 분석을 위한 각종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은 벤처예정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적인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서 개별 벤처기업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 2 장 벤처기업의 개념과 현황

제 1 절 벤처기업의 개념

1 .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의 정의는 경제발전 단계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미국에서는 일찍이 왕성한 기업가 의욕을 가진 유능한 기술 창업(Technical Entrepreneur)이 모태조직으로부터 이적(Spin-off)하여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업화하여 기존 대기업을 제치고 제한된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는 기업을 일컬어 고기술소기업(High technology small firm), 신기술기업(New Technology Based Firm), 위험기업(Risky Business), 고기술기업(High Technology Business) 등으로 불려왔다. 그 후 일본에서도 집중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얻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에서 크게 활약하는 초기 중소기업을 연구 개발형 기업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영어식으로 벤처기업(Venture Business)이라고 표현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기업에 대한 범위를 실제로 어떻게 구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일관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벤처기업에 관한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소수의 핵심기술자가 기술혁신 아이디어의 개발과 상업화를 기본 동기로 하여 설립한 업체¹⁾
- 2) 연구개발을 강조하거나 기술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이용하는데 중점을 두는 회사²⁾
- 3)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갖춘 경영자가 독자적이고 고도로 높은 기술과 경영 Know-how를 무기로 삼아 자력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젊은 기업³⁾
- 4) 소수의 핵심적 기술 창업 인이 신기술의 개발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1) Bollinger, L.Hope, K. and Utterback, J.M, "A review of Literature and Hypotheses on New technology Based Firms", 「Research Policy」, Vol.12, 1983, pp. 1~14.

2) A.C. Cooper, Strategic Management New Venture and Small

3) 김창달, 벤처비즈니스의 경영전략,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 1988, p. 26

위해 설립한 신규기술 또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신생기업으로 높은 위험 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매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되며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여 성취하려는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 주도되는 기업군⁴⁾

- 5) 중소기업으로서 기업가정신이 넘치는 경영자의 지도아래 독자적인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의 Know-how를 바탕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미성숙된 젊은 기업⁵⁾

이외에도 벤처기업에 관한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벤처기업은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술창업인 또는 전문경영자가,
② 첨단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여 기업화하는 새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③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④ 위험부담이 크나 성공했을 때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외국에서 벤처기업을 정의 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표2-1> 외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⁶⁾

국 명	내 용
미 국	중소기업투자법에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 high return)”으로 규정
일 본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R&D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 미만인 기업”을 규정
OECD 국가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을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벤처기업을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우선 지원할 필

4) 이진주, 모험기업.모험자본.기술창업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84.11, p. 9,

5) 윤여경, 우리나라 벤처비즈니스와 벤처캐피탈, 기술이전, 제 5 권 제 2 호 한국기계연구소, 1984, 4, p. 4.

6)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1999.9, 벤처기업육성시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pp.4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 중에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있다.

<표2-2>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⁷⁾

대상기업	유형별 요건
벤처투자기업	◦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다산벤처(주)의 주식(신주에 한함) 인수총액 또는 출자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고, 그 비율을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의 직전 6월 이상(연속하여) 유지한 기업
연구개발기업	◦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이 별표 2 이상인 기업 - 3년미만 기업은 연구개발비율 적용을 제외 -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직전2분기 2,50만원 이상으로 적용 * 연구개발비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외)를 통해 지출된 비용에 한함
신기술기업 (창업하는 기업포함)	◦ 특허권(특허출원을 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포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된 기술 또는 외국인과의 기술도입계약의 체결에 따라 신고한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 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학교·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미국과는 달리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세계적인 일류기술기업으로 육성하기

7)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2006.5, 벤처기업의 확인요령 및 유형별 요건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2. 벤처기업의 특성

벤처기업은 젊고 배태조직(Incubating Organization)에서 기술개발 경험과 경영관리 경력을 가진 창업자에 의하여 설립되며, 조직의 특성은 환경변화에의 신속한 반응(Quick response)과 유연성(Flexiblity)이 강한 조직을 가짐으로서 시장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배태조직에서 파생되거나 이전된 기술이며, 기술집약적 산업이 인접한 지리적 여건에서 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초기 틈새(Nitch)시장을 주력시장으로 자생력을 키우면서 성장한다.

매출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고 인력자원의 기술 및 기능집약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나, 영업이나 기업의 내부관리에 대하여는 축적된 경험이 적으므로, 마케팅, 재무, 생산 등 여러 경영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외부기관에서 아웃소싱하고 핵심역량에 집중한다. 그리고 진출산업은 고성장이 가능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경영성과는 높은 매출 성장율, 고용 성장율, 부가가치율, 수출비율을 보이고, 경영자의 의사결정 및 추진력은 신속하고 강한 것이 특징이다.

3. 벤처기업의 경제적 의의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경제의 흐름은 과학기술 혁명의 성과와 정보화의 급진전 등을 배경으로 기술과 지식이 가치창출의 핵심요소로 대두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경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제대로 부흥하지 못한 채 산업전반에서 외환금융 위기 등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업구조 조정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벤처기업이 등장하였고, 그 중요성이나 위상은 더욱 부각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경제가 구조적인 변혁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의 경제적 환경과 정책적 필요성에 근거한 벤처기업의 경제적 의의를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⁸⁾

1) 산업구조의 세대교체 및 재편

우리 경제는 외환금융위기 이전에 대기업의 재벌중심의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구조 조정과 산업합리화에 상당한 자금과 노력, 시간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로 IMF구제자금을 상환하고 금융위기에서 탈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종전의 산업구조나 전통제조업이 여전히 우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부담하고 있고 이를 단시일 내에 개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의 전통적 제조업 경제구조는 산업발전 단계로 볼 때 노년기에 위치에 있어 후발공업국들의 빠른 가공조립형 산업육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성장에도 한계가 있어 위기상황을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산업을 찾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의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와 노후화된 산업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추진된 것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의 육성인 것이다. 즉 성공적인 벤처기업의 육성은 우리경제의 기술기반을 넓히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시키고, 아울러 우리 경제구조가 관계 산업구조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편 다른 측면으로 기존의 우리경제는 소수의 전략산업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구조를 갖는 한편 대기업 위주의 경직된 산업조직에 의해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과 유연한 대처능력, 경쟁력이 결여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독창적이고 다양한 그러면서도 고도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개성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한 독립성을 시현할 수 있는 벤처기업만이 우리산업구조의 미래지향적인 재편을 선도하고 경직적 산업조직으로 인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동시장 구조의 고도화

벤처기업은 정보통신, 첨단제조업, 컴퓨터, 생명공학 등과같이 고도의 지식기반 산업에 치중된 면이 있으므로 종업원들은 노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즉 종전의 고용관계

8) 김광희,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과 전망, 중소기업연구원, 1998

가 노동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수동적 또는 대립적인 관계였다면, 향후 벤처기업에서의 고용관계는 일을 통한 질적·양적 효익의 향상을 바탕으로 노사가 대등하고 적극적인 관계로 진행됨으로써 노동시장이 고도화되어 갈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외환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실업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경제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고용창출효과 이외에도 노동시장구조의 고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벤처비즈니스의 정의

벤처비즈니스라는 용어는 고기술소기업(High technology small firm), 신기술기업(New Technology Based Firm), 위험기업(Risky Business) 등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역인 벤처비즈니스 외에 의역인 연구 개발형 기업 또는 기술집약적 기업 등이 쓰이고 있으며 직역에 가까운 위험기업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러한 벤처비즈니스의 주된 특성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⁹⁾

- ① 소수의 기술 창업 인이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이다.
- ② 높은 위험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매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된다.
- ③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려는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 주도된다.

벤처비즈니스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나 기업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 벤처비즈니스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벤처비즈니스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이진주, 신기술개발과 모험자본의 역할, 기술관리, 1986, pp40 - 50.

1. 벤처비즈니스의 종류

1) 파생된 독립적 벤처비즈니스(Venture Spin-off)

가장 전형적 형태로서 독립적으로 벤처비즈니스를 창업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때 창업이전의 직장을 의미하는 배태조직(Incubating Organization)이 대학, 연구소, 대기업인 경우가 많다. 즉 이러한 배태조직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사업이라는 의미이다.

2) 합작 벤처(New Style Joint Venture)

중소규모의 벤처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제공하고 대기업은 자본과 판매망 또는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과 적용에 역점을 두는 경우이다.

3) 벤처 머징(Venture Merging)

대기업이 전략적 필요에 의해 벤처기업을 흡수 합병하여 자회사나 사업부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내부벤처(Internal Venture)

대기업이 회사내부에 모험자본을 마련해 놓고 기업내부의 종업원들에게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하게 하여 벤처비즈니스를 스스로 하거나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으로서 기업내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엄격히 말해서 벤처캐피탈은 금융회사이지 벤처비즈니스는 아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해 자본참여를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벤처비즈니스와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벤처캐피탈은 원칙적으로 자본참여만 할 뿐 경영참여는 하지 않는다.

6) 벤처비즈니스 육성 (Venture Nurturing)

벤처캐피탈과 같이 벤처기업에 자본참여를 하지만 이 경우 경영참여까지 한다. 그러나 경영참가가 경영권 확보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벤처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도기적 지원육성이 일반적이다.

한편, 벤처비즈니스는 수행주체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창업하는 형태가 있다. 이것은 주로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도모하는 기술 창업형 중소기업들을 포함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기업내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주로 지속적으로 기술을 축적해 나가려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한다. 셋째, 대기업이 독립적인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서, 이러한 형태는 내부 창업형 모험기업이라고도 불리 운다. 넷째, 대기업이 기업내부에 사업부를 설치하여 벤처를 영위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보통 대기업내 신규모험 사업부형식으로 운영된다.

<그림2-1> 모험사업의 수행주체

	중소기업주도형	대기업주도형
창업형	기술 창업 형 중소기업	내부 창업 형 모험기업
기존 기업형	기술 축적형 중소기업	대기업내 신규모험사업부

2. 벤처비즈니스와 경제발전

벤처비즈니스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의 기술개발기반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관련 산업의 생산성향상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또한 무에서 유를 만들 듯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때문에 고용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기반의 강화¹⁰⁾

최근 기술혁신은 제품 및 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세분화로 인해 기술 그 자체도 세분화되는 성격을 띠고 기술발전의 가속화로 제품 및 기술 수명이 더욱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자, 통신,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기술개발에 있어 순발력과 유연성이 있는 벤처기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벤처비즈니스의 활성화는 기술 잠재력을 상업화하는 경로를 구축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수요에 보다 민감한 기술혁신을 가능케 한다.

(2)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보, 전자 등 신기술에 바탕을 둔 벤처비즈니스 활성화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벤처기업은 대기업에서 기술개발하지 않는 틈새를 공략해야 하므로 업종이나 기술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품개발을 시도하므로 산업 내·산업간 상호경쟁을 촉진한다. 고급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며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성장은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의 이행을 촉진한다.

(3) 관련 산업 생산성 증대

신규 벤처기업의 경우 경쟁우위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바탕으로 창업되므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관련 산업에 공급한다. 관련 산업의 기업들은 재료비, 인건비, 에너지 등의 직접적인 원가절감과 함께 불량률 감소, 공정단축으로 간접적인 원가절감이 이루어지고 생산증대와 함께 품질의 개선으로 생산성 제고효과가 투입, 산출 면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4) 신규 고용의 창출

벤처기업들은 기존의 전통적 업종보다는 3C(Computer, Communication,

10) 박경민, 벤처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LG경제연구원 P17-18

Control)와 3S(System engineering, Software engineering, Service engineering)등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므로 중소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용 창출 효과를 갖고 있다. 기존 대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몸담고 있는 인력이 신생 벤처기업으로 이동하는 등 인력의 신진대사를 돕고 신사업의 전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

제 3 절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

1. 벤처기업의 현황

중소기업청의 최근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 31일 현재 벤처기업체수가 총 9,732개로 집계되고 있다. 아래내용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이다

<표 2-3 >유형별 벤처기업 현황

구 분	벤처투자기업	연구 개발기업	신기술기업	계
업 체 수	330	1,425	7,977	9,732
%	3.4	14.6	82.0	100

* 자료: 벤처기업 현황조사, 중소기업청

<표2-4 > 벤처기업의 업종별 현황 분류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 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계
업체수	6,754	2,054	410	194	184	30	106	9,732
%	69.4	21.1	4.2	2.0	1.9	0.3	1.1	100

* 자료: 벤처기업 현황조사, 중소기업청

또한, 업종별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이 6,754개로 69.4%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소프트웨어분야가 2,054개(21.1%), 연구개발서비스 410개(4.2%), 건설운수업 194개(2.0%), 도 소매업 184개(1.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일반제조분야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 5년간 첨단제조분야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기타 분야의 비중도 증가하여 벤처기업의 업종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¹⁾

지역별 현황에서도 서울이 전체의 36.1%를 차지했고 제주도는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5> 벤처기업의 지역별 현황 분류

구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업체수	3,510	461	651	384	667	2,745	442	90	224	151	363	44	9,732
(%)	36.1	4.7	6.7	3.9	6.9	28.2	4.5	0.9	2.3	1.6	3.7	0.5	100

* 자료: 벤처기업 현황조사, 중소기업청

<표2-6> 벤처기업의 현황(월별 증감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누계
'98년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99년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50	9,732
2006년도	121												9,853

* 자료: 벤처기업 현황조사, 중소기업청

11) 장홍순외, 한국벤처산업발전사Ⅱ, 아르케 p41

또한 벤처기업의 수도 또한 1999-2000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벤처의 버블이 걷히면서 벤처기업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벤처버블붕괴이후 2001년 11,392개였던 벤처기업수가 2003년 7,702개로 감소하였던 것이 2005년 현재 9,732개로 증가하였던 것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다소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2. 벤처기업의 성과

벤처기업의 2004년 평균매출액은 78.5억원으로 2003년 73.4억원에 비해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년도 매출액 증가율인 7.8%로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역시 6.9%로 2003년의 7.7%에 비해 감소하여 벤처기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증가율(%)
매출액	7,343	7,851	6.9%
영업이익	535 7.7%	551 6.9%	2.9%
금융비용 (이자비용)	179	126	△29.6%
당기순이익	426	349	△18.7%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7.2	7.2	-

자료: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재구성

이를 일반기업과 비교해보면, 2003년 국내 벤처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일반기업 평균 8.2%(2003년도 한국은행 발표 자료인 중소기업 5.4%, 대기업 6.6%)보다도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경우, 중소기업(2003년도 4.6%)보다 높고 대기업(2003년도 8.2%)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은 8.3%로 평균치를 상회하나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서비스는 5.3%로 평균치 7.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8> 대기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간 경영성과 비교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첨단/일반제조)
매출증가율(%)	2002년	7.2	10.2	16.4
	2003년	6.6	5.4	25.3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2002년	7.5	5.4	19.7
	2003년	8.2	4.6	8.3

주)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기업경영성과분석.

<표 2-9>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률

(단위: %)				
업종	제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	기타	계(평균)
매출액증가율	25.3	18.7	21.6	24.1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8.3	5.3	2.6	7.2

자료: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세부업종별로 분석해보면,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는 업종별로15.3~41.3%사이로 여전히 고성장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의 경우, 벤처기업의 모든 업종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분야, 컴퓨터 반도체 전자부품 분야, 기계제조 자동차 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제조업 분야는 20%이상의 영업이익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산업 분야, 첨단제조업 분야,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분야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분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이유는 2002년도 영업이익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분야의 특성상 산업 내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수익성이 취약한 업체의 상당수가 확인 벤처기업 군에서 퇴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0> 세부 업종별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첨단제조업			일반제조업		SW정보통신업		기타	계 (평균)
		에너지 의료정밀	컴퓨터 반도체 전자부품	통신기기 방송기기	음.식료 섬유 (비)금속	기계제조 자동차관련	소프트 웨어개발	정보통신 서비스		
벤처기업 분포(%)		15.9	10.6	10.8	18.0	13.9	19.1	3.3	8.4	100.0
매출액	'02	4,591	6,368	10,520	7,035	6,875	3,509	6,614	3,477	5,946
	'03	5,295	8,998	13,581	8,382	8,603	4,201	7,641	4,223	7,380
	증가율	15.3	41.3	29.1	19.1	25.1	19.7	15.5	21.4	24.1
	'04.1/4	7,291	1,705	20,724	1,059	1,215	6,001	1,071	5,095	1,073
영업 이익	'02	431	363	844	491	440	55	342	67	379
	'03	482	688	980	547	673	265	147	110	536
	증가율	11.8	89.5	16.1	11.4	53.0	425	△57.0	64.1	41.4
영업 이익률	'02	9.3	5.7	8.0	7.0	6.4	1.6	5.2	1.9	6.4
	'03	9.1	7.6	7.2	6.5	7.8	6.3	1.9	2.6	7.2

자료: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벤처 확인유형별 경영성과를 보면 신기술 기업의 경우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나 연구개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영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매출액 증가율은 벤처캐피탈 기업의 경우 34.5%, 연구개발 기업의 경우 37.4%, 신기술 기업의 경우 21.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벤처캐피탈 기업의 경우 4.1%, 연구개발 기업의 경우 4.7%, 신기술 기업의 경우 8.0% 으로 나타났다

벤처캐피탈 기업과 연구개발 기업은 매출액은 증가추세를 보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2003년도에 흑자전환이 되었다.

<표2-11>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경영성과

확인유형		벤처 캐피탈	연구개발	신기술	계(평균)
매출액 (백만원)	2002	5,790	3,811	6,537	5,952
	2003	7,785	5,237	7,913	7,382
	증가율(%)	34.5	37.4	21.0	24.0
영업이익 (백만원)	2002	-6	-0.1	525	381
	2003	323	260	633	537
	증가율(%)	흑자전환	흑자전환	20.5	40.9
매출액 영업이익 률(%)	2002	-	-	8.0	6.4
	2003	4.1	4.7	8.0	7.2

자료: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매출액 규모별 분포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벤처기업이 아직 다수(69.1%)이나, 매출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기업의 비율도 31.9%임. 2003년 30.8%, 2002년 30.7%, 2001년 25.1%, 2000년 22.7%와 비교해 보면 점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12> 매출액 규모별 벤처기업의 분포

(단위: 기업수, %)

1억원 이하	1~5 억원	6~10 억원	11~50 억원	50~100 억원	100억원 초과	계
711 (15.5)	552 (12.0)	936 (20.4)	926 (20.2)	625 (13.6)	840 (18.3)	4,590 (100.0)

자료: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지역별로 보면,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전 충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영 성과를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3년도 조사에 이어 2004년도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지역별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구분	매출액(백만원)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2002	2003	증가율(%)	2002	2003	증가율(%)	2002	2003
서울	5,372	6,612	23.1	294	494	68.0	5.4	7.4
부산·울산	5,168	5,951	15.2	472	361	△23.5	9.1	6.1
대구·경북	6,821	8,460	24.0	531	646	21.7	7.7	7.6
광주·전남	3,378	3,925	16.1	-111	189	흑자전환	-3.2	4.8
대전·충남	4,237	7,773	83.4	77	442	474	1.8	5.6
경기	6,607	8,197	24.1	484	603	24.6	7.3	7.4
인천	7,664	8,767	14.4	529	615	16.3	8.0	7.0
강원	5,431	6,131	12.9	404	743	83.9	7.4	12.1
충북	9,242	10,798	16.8	399	731	83.2	4.3	6.7
전북	4,778	7,561	58.2	314	551	75.5	6.5	7.3
경남	6,278	7,316	16.5	516	564	9.3	8.2	7.7
제주	5,549	7,666	38.1	83	26	△68.7	1.4	0.4
계(평균)	5,921	7,343	24.0	381	535	40.4	6.4	7.3

* 제주지역은 조사대상 기업수가 적어 평균 증가율의 의미가 적음.

벤처기업의 매출구조를 매출대상별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대기업 또는 대기업에 소속된 그룹사에 대한 매출이 전체의 25.2%를 차지하였으며,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1·2차 벤처기업들에 대한 매출도 20.3%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약 45.5%정도의 매출이 대기업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2-14> 벤처기업의 매출구조

(단위: %)

구분	대기업또는 대기업계열	대기업납품 1,2차 벤더	중소 벤처기업	일반소비자	정 부	해외부문
2003년	23.0	20.0	17.0	17.0	8.0	15.0
2004년	25.2	20.3	17.8	14.5	8.2	14.0

자료: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

2003년도에는 대기업과 연관된 매출비중이 42.9%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벤

처기업의 대기업 관련 매출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전략인 것으로 생각 된다

<표2-15> 업종별 벤처기업의 매출구조

(단위: %)

구분	대기업또는 대기업계열	대기업납품 1,2차 벤더	중소 벤처기업	일반소비자	정 부	해외부문
첨단제조	22.0	20.5	19.2	12.6	4.6	21.1
일반제조	24.4	22.6	15.0	15.3	9.3	13.5
정보통신	31.2	18.0	19.8	14.8	10.9	5.3
기 타	27.9	16.6	18.7	17.5	12.7	6.7
계	25.3	20.3	18.0	14.4	8.2	13.9

자료: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업종별로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계열,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대상 매출 면에서는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업종의 매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부문 매출비중은 첨단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첨단제조업의 수출기여도를 반영하는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 3 장 국내·외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제도

제 1 절 국내 벤처기업의 지원제도

1960년대 중소기업 관련 법안이 입법화되면서 중소기업 대상의 육성정책이 전개되었다.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 육성이외에 신규창업에 관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동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벤처기업 육성제도가 정비되었고 1997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벤처기업을 분리하여 정책화하였다.

1.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현황

1) 창업지원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기본으로 하여 일반 제조업 중심의 창업을 촉진하여 왔으나, 1997년에 한시적 특별조치법의 형식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의 기반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으며 2005년 11월 17일에 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주체를 중소기업청장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창업의 경우에는 지식기반을 갖춘 젊은 세대 및 교수·연구원 등의 창업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을 일반 법인의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상이어야 하나 2,000만원이상으로 인하하고, 교수나 연구원이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근무시 휴직 및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교수 또는 연구원의 벤처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실험실공장 설치 및 공장등록을 허용하는 등 벤처기업의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3-1> 창업지원법과 벤처특별법의 비교

구 분	창업 지원법	벤처 지원법
대 상	일반중소기업	벤처기업
법적성격	일반법	한시적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 창업투자회사, 창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 설립요건 및 주요기능 · 창업절차간소화를 위한 사업계획 승인제도	· 벤처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술 및 인력공급, 입지 공급상의 장애요인제거 등 특별지원방안 규정

자료 : 벤처기업지원시책 평가 및 발전방안(중소기업특별위원회, 1999. 12)

2) 자금지원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직접적인 지원정책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정책으로 여기서는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부는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자금조달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벤처캐피탈이나 엔젤자금이 부족하였던 1950-70년대에는 정부가 공공벤처캐피탈회사인 중소기업투자회사(SBIC)를 설립하여, 위험이 높은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지금도 중소기업투자회사에 의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벤처 붐이 조성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벤처캐피탈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자금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벤처특별법에서는 벤처기업에게 창업자금 조달과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해 주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표3-2 >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3-2 >투자자원 확충을 위한 벤처특별법의 내용

조 치	내 용
연기금 및 보험 회사 등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것을 허용	각종 연기금(기금의 운용자금 중 10% 이내),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것을 허용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함.
벤처기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벤처기업의 정관에 의해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지 않는 한 증권거래법 제203조에 의한 취득제한을 배제함으로써 자금유통의 원활화를 꾀함. 또한 외국인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상업차관이 아닌 외국인 투자로 간주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함.
벤처기업의 직접 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함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중 당연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고(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③,④),아울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증자자금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부칙 제10조 ①).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한도 확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대규모 기업 집단의 소속회사인 대기업이 타기업에 출자할 경우 순 자산의 25%까지만 총액출자 한도로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벤처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자본금의 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총액출자 한도의 예외를 인정함(독점규제법 제10조 ①,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①).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일반법인 최소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나 벤처기업 창업인 경우 2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기타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시킴으로써 직접금융 관련 규제를 완화함.

자료: 한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1, 「벤처기업의 성패요인과 벤처환경 개선방안」

3) 입지지원

벤처기업은 지식이나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유사 업종의 기업을 집단으로 집적시킴으로써 상호간에 기술 및 경영 정보의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조성이나 벤처집적시설의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1, 55). 정부는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 개발과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이러한 전용단지, 집적시설, 촉진지구,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줌으로써 벤처기업의 입지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

(1)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특별법은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벤처기업 전용단지(이하 전용단지)를 지정·개발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간주함으로써 단지개발에 필요한 타 법률의 각종 인·허가 특례조치, 단지 내와 단지 외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2)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축빌딩이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정보·통신, 연구, 금융 지원기능 등이 편리한 도심의 빌딩 내에 다수의 벤처기업이 입주토록 하여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 표 3-3 >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역별 지정 현황

(단위: 개)

지 역	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경기
지 정	259	150	5	9	18	8	1	2	54
취 소	168	121	1	6	5	3	1	1	24
현 재	93	29	4	3	13	5	0	1	30
지 역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지 정		2	1	2	-	8	1	-	-
취 소		-	-	2	-	3	1	-	-
현 재		2	1	0	0	5	0	0	0

자료 : 벤처넷, 2002a,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취소 현황(2005년5월말 현재)”,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3배중과 및 재산세 5배중과를 배제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280조). 또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있다.

2005년 5월 현재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50개, 경기 54개 등 총259개가 지정되어 있다.

(3)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방자치단체장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에 대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데, 첫째,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있어야 하고, 셋째, 교통·통신·금융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촉진지구 내에 있거나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장소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또는 창업 예비자에게 개인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함과 아울러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¹²⁾

1998년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건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수 등 연구요원과 시설 등 지원여건이 풍부한 대학 및 연구소 등에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대학 등의 주도에 의하여 건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2년에는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 대상은 15개 기관, 확장 지원 대상기관은 35개 기관을 지정하여 센터당 4~6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1992년부터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2001년말 현재 279개를 지정하였으며, 279개 창업보육센터에는 35,000여개의 입주기업(종사자 수 13,000여명)이 기술 및 경영지원 등의 보육지원을 받고 있다.¹⁶⁾ 벤처특별법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도시형 공장(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실험실 공장에 대한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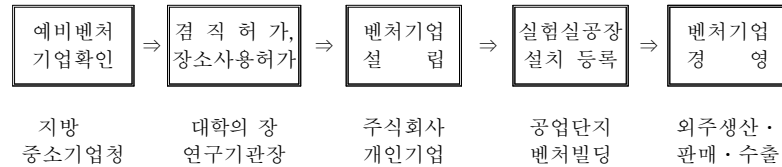
‘실험실 창업’이란 교수 또는 연구원이 당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당해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활용하여 그가 개발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실험실 공장’은 이러한 ‘실험실 창업’을 통하여 설치되는 공장을 의미한다.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대학 등에서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기 용이하게 하고,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입지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벤처특별법에서는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지원하고 있다.

벤처특별법에서는 교수 및 연구원이 그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때,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공장의 바다

12) 한국, 중소기업청, 2000, 「벤처백서」, 대전, 한국: 중소기업청, p212.

면적 합계가 500m²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림 3-1 > 실험실 공장의 벤처기업화 과정



자료: 한국, 중소기업청, 2000. 「벤처백서」, 대전, 한국: 중소기업청, p269.

① 예비벤처기업 확인

- * 사전에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과 기술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함

② 검·직·허·가 및 실험실 사용허가

- * 소속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대표자 검·직·허·가와 실험실 사용허가 (또는 장소임대계약)를 받아야 함

③ 기업을 설립

- *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을 2,000만원이상으로 할 수 있음(이 경우,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또는 법인설립신고)시에 주소를 실험실로 함

4) 조세의 지원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 벤처캐피탈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그리고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개인(엔젤) 또는 개인투자조합(엔젤 조합)에 대한 조세지원이다. 이러한 조세지원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은 개인과 법인, 국세와 지방세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1)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① 법인세·소득세 감면(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세액감면이란 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완전히 면제하거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text{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소득}}{\text{과세표준}} \times \text{감면비율}$$

*산출세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 금액임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 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최초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면제 (조특법 제15조)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창업법인 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 등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3,0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종업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과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로 바꾸어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한편,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매수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시키고 있다.

③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119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그러나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창업 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창업 중에 벤처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 세액을 추징한다. 또한 등록세는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에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등기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등기와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 부동산등기 등의 경우 3배 초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벤처기업이 대도시 내의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④ 취득세 면제 (조특법 제120조)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법 소정의 자산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그러나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 세액을 추징한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이지만, 별장·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경우 5배 초과해서 10%를 부과하고,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증설 및

본점 및 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3배 초과하여 6%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대도시의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취득세 3배증과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⑤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조특법 제121조)

재산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현재의 지방세법은 건축물·선박·항공기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한다.

⑥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116조 제1항 19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⑦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특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지방세·관세 등을 감면받은 자는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등에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면 중소기업에서 조세를 징수하여 농어촌 지역을 위하여 사용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창업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소득세 및 지방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원

①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조특법 제13조 ①, ②)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거나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는 ㉠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 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 설립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 설립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단,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② 배당소득 비과세 (조특법 제13조 제3항)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한다.

③ 창업자 등이 발행한 주식의 저가 평가 특례 (법인세법 제42조 ③3호)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원칙은 원가법이다. 즉, 기업 회계상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가법 가운데에도 주식의 경우에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채권의 경우에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개별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시가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시가가 원가보다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저가법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상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사업금융자가 보유하는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당해 창업자 등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 그 보유주식 총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결산상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창업자별 보유주식총액의 시가가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을 시가로 한다.

(3) 벤처캐피탈 출자자에 대한 지원

①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조특법 제14조 ① 2,3호)

창업투자회사·조합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함으로써 이러한 벤처캐피탈에 출자한 자가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단, 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조특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해야 한다.

② 기관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조특법 제14조 ②)

기관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의 주식,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③ 배당소득 당연종합과세 배제 (조특법 제14조 ③,④,⑤)

거주자가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당연종합과세를 배제한다. 그리고,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신기술 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종합과세를 배제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16조 ①,②)

거주자가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30% (2002년부터 15%)를 출자일이나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의 기간 중 거주자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단, 5년 이내에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지 않아야 한다.

(4)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조세지원

① 개인투자자(투자조합 포함)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조특법 제14조① 4호)

개인투자자(또는 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 경우 창업 후 3년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로서 특수 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이어야 하며,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의 양도이어야 한다.

② 개인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16조①,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30%(2002년부터 15%)를 출자일이나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단, 5년 이내에 출자 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지 않아야 한다.

< 표 3-4 > 벤처기업에 대한

현행 지원제도

개요

구 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창업	법인설립	◦ 설립자본금 2천만원이상 * 일반기업은 5천만원이상	벤처육성특별법 제10조의2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16조의 2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육성특별법 제6조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의 2
창업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금융	코스닥 등록	◦ 등록 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율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증권업협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 (부채비율적용면제, 가점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규정 (융자사업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간이심사대상 확대 등)	신보 및 기술신보규정(보증심사부서)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후 7년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7조

구 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인력	소득우선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 50%까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 한도)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 기회 2회 부여 * 일반기업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 심사시 가점 부여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 (인력지원과)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지원	◦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박람회·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 미국 SBIR 진출지원 (법률컨설팅, 법인설립비 등)	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과)
특허	우선 심사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 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판로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내부지침 (한국방송광고공사, 영업1국)
기타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 까지 가능 *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의 5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의 경우)	벤처육성특별법 제15조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법 제280조

* 자료;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

제 2 절 중소·벤처 지원제도의 변천

1.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변천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은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1960년대에 실시된 경공업중심의 수출산업육성 정책은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의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였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중소기업사업조정법 등을 제정하여 기본골격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실행과 효과 면에서는 예비단계에 그치거나 미흡하였다.

1970년대는 중소기업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에는 중소기업이 조립부문에서 대기업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계열화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후반기에는 대기업과의 발전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대화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업종별 중점육성시책을 발전시켜 규모 및 대기업과의 연관성에 따라 고유 중소기업형, 전문계열화형, 대기업화형으로 구분하여 중점 지원하게 된다.

1980년대 들어와서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를 시행하고 중소기업 기술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정책이 본격화되었다. 1986년도에 제정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설립으로 창업지원체제가 확립되었다. 1990년대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1996년 중소기업청이 설립되어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시행되었으며, 1997년에 들어와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및 기업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의 개설과 운용이 시작되어 투자 자금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전반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창업이 적극 지원되었고, 창업이후의 자금지원도 기술개발과 설비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1997년 벤처기업 창업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만으로는 벤처기업의 육성·지원에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각 지역별 벤처기업집적시설과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여 각 부처별로 기업창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첨단산업단지를 입안 운영하게 되었다.

<표 3-5>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연대별 변천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 수출장려보조금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 수출조합법(61) · 중소기업협동조합(61),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설립(62) · 중소기업사업조정법(61) · 수출진흥법(62) · 지방특화산업육성정책시행(65) · 중소기업기본법(66) · 중소기업수출특화산업지정(66) → 13개 업체 지정 · 중소기업의 전문계열화 조성책(67)과 중소기업의 기업합병시책(69)추진	· 신용보증기금법(74) ·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75) · 중소기업진흥법(78) → 중소기업금융지원 및 경영, 기술지도를 종합적으로 제공 · 금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의무비율 제도 강화(76) · 중소기업진흥공단설립(79)	· 중소기업구매촉진법(81) ·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82)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86) · 신기술금융회(86) · 창업상당회사설립(86) · 중소기업구조조정법(89) · 기술신용보증기금(89) · 아파트형공장 설립(89)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90), 첨단산업 단지조성(90)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89) → 중소기업협동화 단지조성 · 신기술보육사업추진-통신부(91) · 창업보육센터설치(94), 첨단기술창업교육센터 설치, 파기처(94) · 중소기업 및진흥기금 통합운영(95) · 장외시장 KOSDAQ 설립(96) · 중소기업청 독립(96) · 스톡옵션제 도입(97)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97)

2 .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고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는 벤처기업의 역할을 우리경제가 지식정보화의 급진전에 부응하여 지식과 기술이 가치창출의 핵심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 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기본방향은 젊고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높은 위험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내포한 신기술에 도전함으로써 신기술 창출기반을 강화하는데 있었으므로 교수, 연구원 등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을 유도하고 대학 및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창업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한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한 입지지원에 포함한 인프라 확충과 벤처기업의 창업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벤처캐피탈의 확충 및 투자활성화, 대기업과 벤처기업간의 자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였다.

벤처기업 육성정책 및 지원제도는 크게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과 벤처캐피탈 지원제도와 같은 자금지원, 벤처기술전용단지와 벤처빌딩 등 벤처기업의 입지지원, 그리고 기타 기술 및 인력지원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담고 있던 육성정책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진입을 선도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진입을 선도	안정화기(2001~03)	고도화기(2004~07)
벤처 붐 조성 창업·기술기반구축	기존시책정비·내실화 벤처관련규제정비	지원성 시책축소 정책수단 민간이양
부처간 연계성 및 사후관리기능 강화		
정부역할 : 능동적 주도(Initiative)와 인프라(Infra) 조성		

자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벤처기업지원시책 평가 및 발전방안, 1999.

제 3 절 주요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70~'80년대에는 대기업이 주축이 된 수출주도 정책으로 경제부흥을 일으켰다면, 최근에는 산업사회로부터 지식·정보사회로의 이동을 촉진하고, 실업자 고용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방법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경제 제도약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의 경제성장이 벤처기업에 기인 한 바 크다는 분석에 자극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시작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을 근간으로 하여 최근에 시행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활동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벤처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려면 필요한 생산요소의 조달과 공급이 원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에 대한 각 부문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비교하기 위해 우선 각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등 각 나라의 벤처기업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은 분석기준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각국의 제도는 각 지원 요소별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벤처기업에 필요한 요소는 기술부터 인력까지 다양하나 크게 사업부문, 자금부문, 인력부문에 나누어 살펴보겠다.

둘째, 각 지원요소들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벤처기업이 창업 준비기, 창업 및 사업초기,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기 등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들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별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각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보면, 크게 정부의 역할이 많은 것과 민간의 역할, 즉 사회·경제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대별된다. 지원기관별로 구분해 보면,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미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미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벤처기업의 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벤처 붐은 사회의 전반적 영향요인과 벤처기업의 발전 단계별 자금지원기관, 이를 뒷받침하는 세제 및 투자자금 회수를 촉진하는 금융환경, 원활한 인력공급, 창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창업보육센터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처럼 미국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는 지원요소별, 사업발전단계별, 지원주체별로 살펴보겠다.

1) 벤처기업의 지원요소

벤처기업에 대한 외부의 지원항목은 다양하지만 크게 사업부문, 자금부문, 인력부문에 나누어 보겠다. 사업부문에는 창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지 및 시설, 사업 아이템 개발, 기술지원 및 경영자문, 유통 및 판로 등에 관한 지원내용을 살펴본다. 자금부문은 창업 준비에서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에 필요한 각종 자금의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인력부문에서는 벤처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우수한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체제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사업부문의 지원

미국의 벤처기업이 지원받고 있는 제도 중 사업부문에서는 정부 및 민간에서 참여하고 있는 창업인큐베이터,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있는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및 시장 정보제공 네트워크,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및 경영지도 프로그램 등이 있다.

① 창업인큐베이터

창업보육센터는 각종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고 있다. 즉 창업기업은 창업보육센터를 통하여 저렴한 임차료 및 사무기기의 공동이용으로 운영비가 절감되고, 경영상담과 기술훈련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업체의 입주로 입주업체간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는 창업보육센터의 적극적 활동에 힘입어 고용이 증대되고 산업기반이 다 양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정부, 대학, 투자자 등에 의해 설립되고 있으며, 설립 주체들의 목적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산업 활동을 자극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효과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은 평균적으로 임대료등 사업수입이 60%, 정부보조금이 40%로 구성되며 기업경영과 경험이 있는 경영자나 컨설턴트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북미지역에는 1997년 5월 현재 약 550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을 사업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정부와 비영리기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형이 49%로 가장 많고, 정부와 비영리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사계합형이 18%, 대학교가 운영하는 산학형이 13%, 투자회사 등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민간형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정부와 비영리 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 사업주체가 지역공동체와 산업체 간 밀접한 협력을 통해 기술 집약적형 창업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등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과 기술상담은 물론 금융지원알선, 마케팅 지원 등 다방면에서 기업의 성장을 후원하고 있다.

<표3-6 > 북미지역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주체별 현황

사 업 주 체	구 성 비
정부 또는 비영리기관	49
정부와 비영리기관 또는 민간기업 공동	18
대학교	13
민간기업	12
기타	8

자료: 전미창업보육협회(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 : NBIA), p15

<표3-7 >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 실태

서비스 내용	응 답 비 율
전반적인 경영지도	97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지원	85
응접실, 타이핑 등 사무 관련 지원	85
금융지원알선	845
마케팅 지원	79
재무, 회계지원	65
기술상담	50
지적 재산권 등 법률자문	10

자료: 전미창업보육협회(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 : NBIA), p19

전미창업보육협회(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 : NBIA)가 북미지역 소재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가 경영지도(97%), 금융지원알선(84%), 마케팅 지원(79%), 재무, 회계지원(65%), 기술상담(50%)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프로그램

SBIR프로그램은 신기술개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프로그램으로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Act에 의거 1982년에 신설되었다. 동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SBA)의 주관 하에 국방부를 비롯하여 10개의 연방정부기관이 연구개발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과 상품화사업에 할당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SBIR프로그램의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자격, 기술혁신 정도, 기술적 가치, 장래 상품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미국에 소재하고 미국인이 소유한 영리목적의 독립기업으로 종업원이 500명 이하이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연구책임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동 프로그램은 아이디어가 상품화 될 때까지를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지원한다. 제1단계는 선정된 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기술적 가치와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6개월 이내에 최고 10만 달러까지 지원된다. 제2단계는 제1단계에서 선정된 기술 중 장래성이 있는 기술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제품을 제작하여 상품성을 시험. 평가하는 단계로 SBIR참여기관들은 SBIR프로그램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이 아닌 비 SBIR자금으로 지원하고, 또한 벤처캐피탈 등 민간부분도 이단계에서는 자금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③ 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프로그램

정부, 대학 및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SBDC는 산학협동에 의한 종합적 기업 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영 및 기술지도, 금융, 인큐베이터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일괄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SBDC는 신설기업 뿐만 아니라 사업 확대 및 다각화를 꾀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 타당성, 사업 및 마케팅 계획, 기업매도 및 인수, 입

지, 시장조사, 생산 및 운영계획, 무역, 정부구매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SBDC는 전국에 걸쳐 56개가 있으며 이들은 산하의 대학, 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 등에 천여 개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과 주정부, 대학, 상공회의소 등에서 조성하는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SBDC에는 법조계, 학계, 상공회의소, 경영 자원봉사단체인 SCORE (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④ ACE-Net(Angel Capital Electronic Network)

중소기업청은 1996년 10월부터 개인투자자와 벤처기업은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Angel Capital Electronic Network(Ace-Net)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인터넷이라는 첨단네트워크를 통해 엔젤과 벤처기업을 적극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미국 내 엔젤의 투자를 원하는 벤처기업이 30만 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현재 (Ace-Net)의 운영에 참가하고 있는 4개의 엔젤 금융 담당 비영리기관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중소기업 자금차입신청서(Small Corporate Offering Registration : SCOR)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Ace-Net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투자가는 순 자산이 1백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수입이 2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4개의 비영리기관 네트워크에 등록하여 Ace-Net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투자자들은 업종, 규모, 경영자 연령, 성별, 인종 등과 같은 다양한 투자기준별로 투자대상기업을 검색할 수 있다.

(2) 자금 부문의 지원

미국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기관의 역할이 벤처기업 발전단계별로 잘 구분되어 있다. 연구개발 및 창업초기에는 제도금융권보다는 개인투자자인 엔젤로부터, 제품생산단계에서는 벤처캐피탈회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투자확대 단계에서는 NASDAQ 등 장외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투자자인 엔젤 및 벤처캐피탈은 이때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최근 들어 엔젤과 벤처캐피탈회사의 투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자금규모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미 중소기업청은 앞에서 설명한ACE-Net을 운영하여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있다.

자금부문의 지원은 미국 벤처기업을 창업초기에 주요한 자금원인 엔젤, 사업의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사업의 성장기에 투자재원의 주요 확보 창구인 NASDAQ 등을 차례로 알아보기로 한다.

① 엔젤(Angel)

엔젤(Angel)이란 신설 벤처기업에 자금지원과 경영 지도를 해주는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의미에서 생긴 명칭으로 보통 개인투자자 또는 개인 벤처캐피탈 리스트를 지칭한다. 이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큰 투자수익을 올림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첨단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체 엔젤의 연간 투자금액은 벤처캐피탈 투자액의 약 5배 규모인 약 3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엔젤은 벤처캐피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소기업과 신설기업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업체당 투자금액은 40만 달러 정도이고 5~10명이 공동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인당 평균 투자액은 4~8만 달러이다.

한편 업체당 평균 창업비용이 약 2만 5,000달러 정도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엔젤의 연간 투자금액 200억 달러는 80만 개의 창업자금에 상당한다. 현재 엔젤의 투자잔액은 2,000억 달러(벤처캐피탈의 5~6배), 활동하고 있는 엔젤수는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② 벤처캐피탈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탈회사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소기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투자법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투자하고, 정부로부터 장기저리융자와 지급보증 등과 같은 각종 지원을 받는다.

반면, 민간 벤처캐피탈회사는 3/4 이상이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과 관련없이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각 전문가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벤처캐

피탈은 고도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전문적이 벤처캐피탈리스트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고도의 정보 수집력과 분석력, 실사능력을 갖추고 있어 높은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을 획득하고 있다. 이들 독립된 벤처캐피탈은 특정 분야·업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 창업초기 기업에만 투자하는 회사, 반대로 성장단계별로 각기 다른 재무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회사 등으로 특화되어 있어 성장단계별로 각기 다른 재무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들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중소기업투자회사는 1958년 입안된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근거한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다른 벤처캐피탈회사처럼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의 자회사, 개인기업, 주식회사, 투자조합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SBIC가 현재와 같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1992년에 제정된 ‘중소기업 자본 확충을 위한 법률’(Small Business Equity Enhancement Act)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정부의 금융지원은 사채에서 자본투자로 까지 확대되었고 지원금액은 9천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SBIC제도는 정부가 벤처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간접적 지원방식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SBIC는 주로 민간 벤처캐피탈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 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의 중소기업청은 1971년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불리한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중소기업투자회사(Special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 SSBIC)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SBIC 주식처분, 교환 및 무가치화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자본손실이 아니라 무제한 영업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적용, 누적이익에 대한 면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SBIC는 자본금 500만 달러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지식·경험·능력 등 중소기업청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투자회사는 독립적인 투자결정을 내리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일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 중소기업청은 SBIC가 규정에 따라 투자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있다.

중소기업투자회사는 주식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SBA 신용공여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투자 또는 5년 이상의 장기융자 및 이를 병행하는 방식 등에 의해 벤처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④ 민간 벤처캐피탈회사

민간 벤처캐피탈회사는 일반적으로 설립주체에 따라 금융기관과 일반기업들의 자회사와 독립적인 회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과 같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투자조합의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보통 벤처캐피탈회사가 연·기금, 보험회사, 개인투자자 등을 모아 하나의 투자조합을 결성하며 이때 벤처캐피탈회사는 투자기업의 선정, 펀드관리,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 무한책임사원이 되며, 다른 투자자는 일반조합원(Limited Partner)이 된다.

민간 벤처캐피탈회사의 주요 자금조달원은 기관투자의 투자로 1993년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 ERISA)의 개정으로 벤처캐피탈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연·기금의 비중이 59%에 달하여 벤처캐피탈의 최대 자금조달처로 부상하였다.

(3) 인력부문의 지원

미국의 벤처기업들은 서부의 실리콘밸리, 동부의 시애틀 및 보스톤의 교외의 routel28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들 지역은 스탠포드 대학과 MIT라는 두뇌의 산실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이들 대학의 졸업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함으로써 벤처기업 최대의 필요조건인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특히 스탠포드 대학은 학교 부지를 첨단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영구 임대함으로써 실리콘밸리와 함께 성장하여 왔으며, 이

대학N 전자공학과 교수였던 터먼은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Eastman Kodak, GE, Lockheed, Hewlett-Packard 등이 “스탠퍼드 산업단지”에서 성장한 기업들이다.

이들 대학의 고급인력들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스톡옵션(stock option)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학 및 연구소 연구원들을 벤처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SBDC 프로그램 등이 있다.

① 스톡옵션(stock option)

미국의 벤처기업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위치한 대학의 덕택에 힘입은 바 크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세제변화에 따라 스톡옵션을 적절히 이용했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자사의 특정 종업원에게 자사 주식을 일정 기간 내 특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줌으로써 향후 주가의 향방에 따라 그 차액을 보상받게 하는 것이다. 1920년대에 이를 도입한 미국은 세제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도로 발전시켜 왔으며, 주로 장기의 업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상제도로 정착시켜 왔다. 대부분이 주식매입 선택권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주식매입 선택권은 선택권을 부여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과 기업이 갖는 편의성의 상충관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ISO(Incentive Stock Option)는 주주들이 승인한 계획서에 근거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당시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1사업 년도에 1인당 10만 달러로 제한된다. ISO의 특징은 보유기간이 2년을 경과하거나 행사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날 경우, 미 실현 보유이익이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주식 매입 선택권이 실제 행사되어 이익이 발생된 시점이 장기 자본이득으로 인식되어 과세된다는 점이다. 주식매입 선택권의 보유자에 대한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ISO는 발행상 엄격한 규정과 회사의 편의에 따른 설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NSO(Non-Qualified Option)는 회사의 편의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 의해 선호되고 있다. 반면에 주식매입 선택권의 보유자에 대한 과세시점이 주식매입 선택권에 명기된 행사 만기일

이기 때문에 미 실현 보유이익에 과세되는 단점이 있다. 보유자는 선택권의 행사와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미래 주식가치 변화위험에 노출된다.

2) 사업단계별 지원제도

미국에서는 사회내의 여러 장치들에 의해 기업성장의 각 단계별 지원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미국에서는 각 사업단계별로 지원기관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정단계의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최소화하며 자원의 고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 준비단계에서는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 최고 수준의 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가들이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이들 사업가들은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톡옵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기술, 경영기법, 노하우 등은 첨단단지, 창업인큐베이터, 대학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창업 및 사업초기에는 엔젤들의 투자활동이 활발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 밖에 기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출 및 대출보증,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을 받는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및 특별중소기업투자회사(SSBIC)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SBIR), 민간 벤처캐피탈 등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벤처캐피탈의 경우 창업초기에 투자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투자업체를 발굴하고 심사하는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인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큰 활약을 하고 있다.

사업의 확장단계에서는 일반 증권거래소(SEC)에 상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장외시장인 NASDAQ을 활용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표 3-8> 미국 벤처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제도

창업준비기		창업 및 사업초기		사업성장기	
지원사항	기관,제도	지원사항	기관,제도	지원사항	기관, 제도
.우수인력 확보 .기술지원 .공간,설비지원 .기술개발, 노 하우 경영기법	- Stock Option -첨단 과학단지 -창업인큐베이터 -대학(SBDC)	.창업자금 .개발자금 .성장자금	- 엔젤 -SBIC -SBIR -벤처캐피탈	.본격 성장자금 .사업설명회 .주식공개 지원 .각분야의 전문 임원 파견	-NASDAQ -Road Show -IPO -벤처 캐피탈

. 세제지원(S법인제도) . 투자자 및 기업 연결 네트워크(ACE-Net) .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적 분위기 정착

출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김영관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3) 지원주체

미국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정보보다는 민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미국의 최대 벤처단지인 실리콘밸리는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아무런 지원 없이 이루어졌다.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대학의 재정문제 해결방안으로 대학 소유의 땅에 산업단지를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대학 당국은 소유부지의 일부를 하이테크산업 관련 회사에 1999년 동안 임대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학 발전기금을 모금하였으며 이것이 오늘날 실리콘밸리를 있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정부가 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직접적 지원은 최소화하는 반면 민간의 창의와 노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 대출이나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은 고도의

신용평가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업 금융기관들에 의해서 선택된다. 오히려 상업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중소기업청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로 적극 추천한다. 정부는 추천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대상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업이 부도나게 되면 정부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추천한 상업 금융기관도 피해를 입게 되어 금융기관들의 심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있다.

(1) 정부부문의 지원

정부지원제도의 근간은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벤처기업 투자시 갖게 되는 투자자들의 위험을 경감시키는 등의 간접방식이다.

정부의 직접적 벤처기업 지원제도는 중소기업투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SBIR) 및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및 대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제도가 있다.

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투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혹은 자금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중소기업투자회사는 주로 업력 5년 이하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자금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투자업체의 선정 및 투자방법 선택 등의 문제는 중소기업투자회사 고유의 의사결정 사항이다.

<표 3-9>를 보면, 1995년 이후 지원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표 3-9> 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구 분	자금지원		신용공여	
	지원투자 회사 수	금액	지원투자 회사 수	금액
1991	29	64.8	27	53.6
1992	26	60.1	24	53
1993	21	63.4	22	65.3
1994	20	95	200	106.9
1995	66	332.1	78	354.3
1996	88	387.9	88	398.1

자료 : 미 중소기업청, ibid

이는 미국정부에 첨단기술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투자회사에 지원을 늘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5년 백악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Small Business)에서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방안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정부부문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중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은 세제지원이다. 1958년 도입된 S법인제도¹³⁾를 일정한 규모 이하의 소규모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해당 법인의 손익을 개인주주에게 출자비율로 배분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개인주주는 출자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소득과 출자기업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소득과 출자기업의 손실을 합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초기에 있는 중소기업은 적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점을 제공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세제지원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SBIC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우대제도

개인이 SBIC가 발행하는 주식에 투자하고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했을

때는 실현된 매각이익의 50%는 과세하지 않는다.

② 미공개기업 주식매각 손실 과세특례제도

통상 개인별 연간 3천 달러를 한도로 주식매각 손실을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그러나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적격 중소기업의 설립 및 증자 시에 취득한 개인이 그 회사 주식의 매각으로 입은 손실은 5만 달러를 한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할 수 있다.

③ 주식매각 이익 과세특례제도

주식매각 이익은 보통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되고 있으나 적격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할 때는 매각 이익의 50%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 비과세되는 금액의 한도는 당해연도 매각된 주식취득액의 10배 또는 천만 달러에서 전년도까지 비과세된 적격 주식의 매각 이익 누계 액을 차감한 잔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앞에서 언급한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중심은 정부보다는 민간차원에서 비롯되었다. 정부가 정한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한 것은 민간이다. 제도금융권의 지원대상 밖에 위치한 연구개발 및 창업초기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상당부분은 엔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갖는 높은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며 정부로부터는 단지 세제지원만을 받을 뿐이다. 중소기업투자회사보다 훨씬 많은 600여 개의 민간 벤처캐피탈회사들이 투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의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들 역시 엔젤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세제지원 외에는 별다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4) 미국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특징

지금까지 미국이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주요 지원요소별, 사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정리한 미국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3) S법인이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Sub chapter S의 규정에서 유래된 명칭임.

첫째, 지원요소별로 본 미국의 지원제도는 벤처기업에 대한 모든 지원내역이 제도라는 측면보다는 하나의 사회시스템적인 성격을 토대로 거의 모든 부분이 지원되고 있다. 사업초기의 지원을 위한 창업인큐베이터, 엔젤, 벤처캐피탈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성장단계의 벤처기업은 NASDAQ을 이용하여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NASDAQ의 발달은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엔젤, 벤처캐피탈, 일반투자자들도 투자자금에 대한 자금회수 및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거래가 무척 활발하다. 인력문제는 정부가 특정 인력을 충당해 주기보다는 모험가적인 정신을 가진 인력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유인책으로 스톡옵션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스톡옵션의 활용은 종업원뿐만 아니라 전문 경영자에게도 적용되어 우수한 인력이 벤처기업으로 조달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둘째, 사업 성장단계별로 보면 미국의 벤처기업지원은 각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 역할이 분배되어 있다. 사업초기의 엔젤과 그 이후의 단계의 벤처캐피탈의 역할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며, 벤처캐피탈 사이에서도 벤처기업의 단계별로 투자대상이 뚜렷이 다른 경우가 많다.

셋째, 미국의 벤처기업 지원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부문이다. 정부의 지원은 세제지원이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엔젤, 벤처캐피탈, 대학 등 민간부문에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성격은 지원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투자이다. 즉, 벤처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을 찾아내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자라잡고 있어 사업에 성공하려는 벤처기업가의 노력이 커지고, 이러한 노력이 미국 전체의 벤처기업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시혜적인 지원보다는 벤처기업 자신의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사회경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미국 벤처기업이 이처럼 발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건전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다는 자부심 등이 미국 벤처기업이 성공하는 토대가 되었다.

2. 일본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1) 벤처기업 지원요소

벤처기업이 미국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에게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벤처기업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일본은 산업화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대상 벤처기업을 정의하고 그에 부합되는 벤처기업에 자금 및 경영관련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지원제도는 크게 중앙정부의 지원제도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추진하는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정부지원제도는 중소기업청의 주관 하에 중소기업사업단이 산학 기술교류 촉진, 기술이전 장려사업, 정보발신사업, 벤처빌딩의 설립, 세제지원 등 전반적인여건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에 기초한 저리융자제도, 벤처재단 및 벤처캐피탈회사에 대한 지원,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 환경에 맞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다.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진 개인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는 역부족인 것 같다. 벤처캐피탈의 경우도 창업초기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성장기에 접어든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인 면에서 볼 때 일본의 벤처기업 육성시책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제도를 도입해 놓고 있으나, 현재까지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일본의 벤처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은 비슷한 환경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중 지원요소의 상당부분은 자금이 치중되어 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은행 등 많은 기관들이 벤처기업 자금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다.

(1) 사업부문의 지원

벤처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해 1989년 이후 창업보육센터가 전국에 걸쳐 설립되고 있으며, 벤처기업과 관련된 인사들의 교류촉진 및 전자 네트워크를 이용한 벤처기업 홍보활동 대행 등이 추진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사항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① 창업보육센터

1989년에 최초로 설립된 일본의 창업보육센터는 최근까지 50여개에 이르고 있다. 재단법인이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설립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며 특이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의 기술과 자금을 이용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다.

입주기업의 상당수가 기존 기업의 연구부서인 경우가 많아 창업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입주조건을 살펴보면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70%를 다소 초과하고, 입주기간은 3~5년이 대부분으로 미국 창업보육센터보다 입주기간이 다소 긴 편이다. 창업보육센터의 회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용 입주기업수가 많지 않고 재정의 외부 의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창업보육센터는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적 자립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심지어 영리목적의 창업보육센터도 등장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외부기관과의 연계 활동 면에서도 일본의 창업보육센터는 미국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다. 미국의 창업보육센터들은 외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일본의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에 대해 기술관련 서비스는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으나 외부기관의 연계가 부족하여 경영관련 서비스 제공활동은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미국의 창업보육센터 관리자들은 경영관리에 경험이 풍부하여 입주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일본의 관리자들은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벤처 프라자 사업

중소기업사업단과 통상 산업성 등이 주최하는 벤처산업 관련 인사들의 교류기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벤처기업의 경영자, 엔젤 및 벤처캐피탈 등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변호사·세무사·회계사·기술 및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부터 경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인재확보를 위한 구인정보를 광고하며, 정부의 중소기업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③ 벤처기업 정보발신산업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일괄수집,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해당 벤처기업들이 투자자 혹은 거래선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 창조활동촉진법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으로 벤처캐피탈 회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이다.

(2) 자금부문의 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공공 성격이 강한 정부계 벤처캐피탈회사와 상업금융기관 계열의 민간 벤처캐피탈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투자조합이나 엔젤의 활동은 매우 소극적이어서 연구개발 및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일본의 벤처기업 지원대책 중 특이한 것은 벤처기업을 제도금융권의 자금지원 대상에 넣으려는 노력들이다.

정부기관들 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일본의 벤처캐피탈, 엔젤, 직접금융시장 및 정부의 자금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벤처캐피탈

미국의 벤처캐피탈이 주로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는 독립형태를 취하는 데 반하여 일본의 벤처캐피탈은 주로 금융관련 회사의 출자에 의해 설

립되었다. 미국의 벤처캐피탈과 비교한 일본 벤처캐피탈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투자액의 대부분을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조달하는 반면, 일본 벤처캐피탈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차입금이나 증자자금을 투자재원으로 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엔젤들의 투자에 뒤이어 비교적 벤처기업 창업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 반면, 일본 벤처캐피탈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셋째, 미국 벤처캐피탈은 자본투자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지원에도 적극적인 반면, 일본의 벤처캐피탈은 주로 자금지원에 그치고 있다. 앞서와 같이 일본 벤처캐피탈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든 기업에게 투자하기 때문에 경영에의 참여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벤처 캐피탈은 전문가 2~3명에 의해 1개 벤처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들은 기업 경영에 관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경영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일본 벤처캐피탈은 주로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금융관련 업무에만 매달려온 사람들에게 기업 발굴, 심사, 투자, 회수 등의 기능에 따라 업무를 분할하여 맡김으로써 경영지원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넷째, 투자대상 업종 면에서 미국 벤처캐피탈은 S/W, 바이오, 의약, 통신 및 전자 등 첨단산업에의 투자비중 71%에 이르고 있으나, 일본 벤처캐피탈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17%에 불과하다. 미국 벤처캐피탈은 자체 기술평가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제품이 지닌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일본의 벤처캐피탈은 이들 분야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자체적으로 투자대상 업종을 제한하고 각기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데 반하여 일본 벤처캐피탈은 업종제한 없이 전 분야를 걸쳐 투자하고 있다.

<표 3-10> 미국과 일본의 벤처캐피탈 전문화 정도 비교 (단위 : %)

구 분	투자업종 제한	업종제한 없음	계
미 국	58.6	41.4	100
일 본	5.7	94.3	100

여섯째,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자본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데 반하여 일본 벤처캐피탈은 리스, 대출, 팩토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벤처캐피탈의 유형은 미국의 SBIC에 상응하는 公的 벤처캐피탈과 금융기관의 출자로 설립된 민간 벤처캐피탈 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公的 벤처캐피탈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에 의하여 동경, 나고야, 오사카에 설립된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1963년 11월에 설립되었다. 이들 3개 회사가 출자하여 중소기업벤처진흥기금을 설립함으로써 총 4개의 공적 벤처캐피탈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투자현황을 정리하면 <표 3-9>과 같다.

<표 3-11> 일본의 공적 벤처캐피탈 현황('96. 3월말 기준)

회사	누계 투자 잔고	투자건수	향후 투자희망 분야
(주)동경중소기업 투자육성	31,000	693	멀티미디어, 바이오, 환경·생활·건강
(주)오사카중소기업 투자육성	22,643	525	반 도 체 , 멀 티 미 디 어, S/W, 센서 및 계측
(주)나고야중소기업 투자육성	15,520	373	멀티미디어, FA기기, 의료, 바이오, 환경·환경·생활·건강
(재)중소기업벤처진흥기금	456	173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97 여름

(2) 민간 벤처캐피탈

1972년 설립된 “교오토 Enterprise Development”로 시작된 일본의 민간 벤처캐피탈은 3기에 걸친 발전단계를 거치며 성장해 왔다. 최근에는 150여개 이상의 민간 벤처캐피탈이 활동하고 있다.

1차 호황기는 독자기술 기반을 갖추으로써 선진국에 대한 기술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노무라 증권계열의 일본합동 파이낸스 사를 비롯한 8개의 민간 벤처캐피탈협회가 설립되었으나 1차 석유파동으로 침체되었다.

1983년 장외주식시장의 기업공개 요건이 크게 완화됨으로써 시작된 2차 호황기에는 첨단 분야의 성장을 예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 은행 및 외자 계 기업이 중심이 되어 60여개 벤처캐피탈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엔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유력 벤처기업 도산함에 따라 더 이상의 발전은 볼 수 없었다.

3차 호황기는 거품경제가 붕괴되자 21세기를 담당할 신흥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업공개가 늘어나면서 시작되었다. 과거의 호황기에는 증권회사나 은행계열의 벤처캐피탈이 중심이 되었지만, 3차 호황기는 보험 및 일반 기업들의 벤처캐피탈 설립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엔젤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은 총 1,200조 엔으로, 1인당 순 금융자산(94년말 기준)은 미국의 504만엔(1달러=100엔 기준)보다 20% 이상 많은 613만엔을 기록하고 있다. 막대한 금융자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엔젤 활동은 미약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은 투자손실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없기 때문에 투자는 개인자격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법인자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일반 주식투자의 경우 연간 3,000달러의 투자손실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반면,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5만 달러(부부합산의 경우 10만달러)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또한 영국에는 미공개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해 연간 10만 파운드까지 투자액의 20%를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제도가 있다. EIS에서는 매각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줄 뿐만 아니라 매각이익에

대한 과세도 연기해 주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사업

중소기업사업단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지방에 설립된 1997년 3월 현재 총 41개가 설치된 벤처재단에 무이자로 장기대출을 해주고 벤처재단은 이를 다시 벤처캐피탈에게 저리로 융자하거나 벤처캐피탈이 인수하는 회사체에 지급보증을 해주고 있다. 또한 벤처재단은 중소기업신용보증금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시킨다. 지원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창업활동촉진법의 지원대상 기업 또는 각 지방의 벤처재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으로 주식회사 또는 이를 설립하려는 사업자이다.

라. 벤처기업 출자 수입 지원사업

벤처기업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하여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경우, 기업의 정부공시를 위해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 법인에게 재무제표의 정비 및 재무평가를 의뢰하면 이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2/3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 인력부문의 지원

미국의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을 이용하여 주변 대학의 고급인력을 수혈받는 데 반해, 일본은 정부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벤처기업의 전문 인력의 활용을 돕거나 산학협동 촉진을 통한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인력 활동이 시도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다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벤처기업 지원지도사업

벤처기업 지원지도사업은 신규사업분야 진출, 신제품 및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려는 창업 10년 이내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

록되어 있는 기업경영 유경험자, 중소기업 진단 사, 기술사 등 전문가를 벤처기업에 장기간 파견, 경영과 기술측면에서 해당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현장지도로 해결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전문가의 등록과 파견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벤처기업이 파견을 원하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도 있다. 단, 벤처기업과 해당 전문가가 현재 또는 과거에 유료 컨설팅 계약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한 적이 있으면 안 된다. 전문가 파견에 따른 경비의 1/3은 해당 벤처기업이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급한다.

② 중소기업 산학기술 교류촉진사업

중소기업사업단이 대학 등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교류 기회를 만드는 산학교류회를 개최하여 대학과 중소기업에 의한 공동연구, 대학의 연구결과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상호동업 등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대학, 국립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결과 중 중소기업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표하고, 중소기업은 독자기술을 대학 등 연구기관에 홍보한다.

연구기관의 발표내용과 중소기업의 전시기술 등에 관심 있는 사람끼리 개별상담 등을 통해 공동연구와 동업을 유도한다.

③ 창조기반 기술이전 컨설팅사업

중소기업사업단이 주관하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수한 연구 인력을 상담자로 등록하고 연구결과와 사업화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이 요청해오면 해당 중소기업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기술이전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사업 단계별 지원제도

일본에서는 엔젤 및 민간 벤처캐피탈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연구개발 및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보육센터가 기존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부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의미가 강하

지 못하다.

(1) 연구개발 및 창업초기

<표3-10>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벤처캐피탈들이 창업초기는 물론 심지어 연구개발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까지 투자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M&A 및 주식장외시장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더라도 자금회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장외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기업의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금 회임기간이 길어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그 만큼 커지게 된다. 또한 벤처기업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경감시켜 주는 세제지원제도가 미미한 것도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살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표3-12> 미국과 일본의 벤처캐피탈 투자시기 비교

(단위 : %)

벤처기업발전단계	미 국	일 본
연구 개발단계	6	-
창업 초기단계	56	6.5
성장단계	24.1	54.8
안정단계	1.7	33.9
성숙단계	5.2	4.8
LBO단계	6.9	-
합 계	100	100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백서 ‘97”, 최인규

(2) 사업성장기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지원제도가 성장기에 접어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범단계에 있는 창업기업들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기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의 입

주로 허용되고 있다. 이미 성장기에 접어든 기업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측면에서 창업 초기 및 연구 개발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지원주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벤처기업 지원제도는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져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벤처기업 지원활동은 위축되어 있다. 정부지원 시책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데 비해 민간의 벤처기업 지원은 일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자금지원이 대부분이다.

가. 정부부문의 지원

일본 정부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에서 시작하여 자금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와 같은 금융기관 설립,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시책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들로 지역 특성에 맞는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구체적 시책 외에 일본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과 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

중소기업의 창업활동과 연구개발 및 이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0년간 운영될 한시 법안으로 1995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창업지원대상은 개업5년 미만의 제조업, 인쇄업, S/W 및 정보처리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들에게는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조치가 인정되며 설비투자액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조치가 주어진다. 즉, 자본금이 1억 엔을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투자주식회사의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사업용 설비투자의 75%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및 30%에 대해서는 특별 상각이 인정된다.

연구개발 및 이의 사업화를 꾀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는 물론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의 특례에 의하여 담보나 보증없이 2천만엔, 무담보의 경우 7천만엔, 보증한도 3억엔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근대화 자금 및 각종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특정신규사업 실시 원활화 임시조치법(신규사업법)

통상산업상 장관으로부터 특정신규사업으로 인정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사채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시 산업기반정비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신설기업 또는 설립된 지 3년 이내이고 자본금 10억엔 이하의 기업은 신규사업투자주식회사로부터 자본금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출자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액의 80%까지를 동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정신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경영지도 및 필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세제지원

앞서 엔젤활동이 미약하다는 이야기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일본의 벤처지원과 관련된 세제는 미국이나 영국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엔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 세제개편시 엔젤의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의 주요 골자는 개인투자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엔젤 기업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주식양도 이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세제개편 이전에는 당해연도의 주식양도 이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이의 이월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이전에는 실제 주식의 매매가 발생하여 매각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지만 개정 세법에서는 피 투자기업이

기업해산과 파산, 기업청산 등 실질적으로 도산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다.

과거에 비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다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은 파격적인 감세조치라고 볼 수 없다.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벤처기업의 조건으로는 설립된 지 5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으로 매출액 대비 시험연구비 및 개발비의 비중이 3% 이상인 기업이다.

또한 창업 1년 미만의 기업과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의 경우 연구원 2명이 상이고 전 직원 대비 연구원의 비중 10% 이상이면 해당된다. 서비스업의 경우 시장 조사비를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일본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원제도는 대부분 벤처기업에 대한 저리의 융자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벤처캐피탈에 자금을 예약하고 벤처캐피탈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벤처캐피탈이 기업의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지급보증해 주고 있다. 벤처캐피탈을 이용한 지방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에 대한 미 중소기업청의 금융지원과 유사하다.

오까야마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회사 설립때까지 자금지원, 법률자문 및 경영지도 등 일관 지원을 해주는 "Young Edison 육성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마모토에서는 "기업가 지원재단"을 설치하여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다.

나. 민간부문의 지원

일본정부의 강력한 벤처기업 지원 의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일본의 벤처산업의 빠르게 성장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으나 민간부문의 창의와 노력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부분 위축시켰다. 정부의 지원혜택을 제외한 벤처기업 지원은 상업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거품경제 및 동남아경제의 붕괴로 인해 거액의 불량채권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지원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선호를 인해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들의 벤처기업 지원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소프트웨어나 특허권 등을 이용한 지적소유권 담보대출제도, 계열관계에 있는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투자사업조합 결성, 벤처기업 매출채권에 근거한 수익증권 발행 등이 있다.

4) 일본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특징

수년간 경제 불황에 시달려 온 일본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벤처기업 활성화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일본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특징은 첫째,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은 담보 위주로 대출관행으로 인한 낙후된 금융시스템 하에서 벤처기업에 자원을 배분해 주는 효과를 낳게 되어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민간의 창의와 노력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기 때문에 시장을 왜곡시키고 벤처기업에 대한 거품을 만들어낼 우려를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몇몇 유망 벤처기업들이 지나친 사업 확장으로 도산에 이르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둘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와는 달리 벤처기업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는 매우 인색하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벤처기업 투자에 따른 손실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 투자가 지닌 위험의 일부를 경감시켜 주고 있으나 일본은 다른 주식투자에 따른 이익과의 합산만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이나 영국이 벤처캐피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해서 상당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러한 제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일본은 벤처기업 지원시책의 수혜대상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선정방법은 포지티브시스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된 범위는 없으며 단지 중소기업이면 모두 해당된다. 영국도 적격 중소기업이란 개념을 도입하면 지원대상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정의

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는 기존 시장 환경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시도하는 데 있다. 정부가 만든 벤처기업의 틀은 향후 새로운 기업의 출현을 막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의 벤처기업 지원제도는 미국의 사회 시스템적인 지원과는 달리 정책적인 육성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될 여지가 많다. 미국의 정부가 직접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지원대상의 선정은 상업 금융기관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정부 정책에 민간의 창의와 노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비능률이 작용할 소지가 많지 않으며 비효율적일 위험도 훨씬 줄어든다.

3. 영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보수성이 강한 영국에서는 80년대 이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영국 벤처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벤처기업은 1만4천여개에 달하며 그에 따른 총고용인원은 100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1983년 이후 벤처기업에 투자된 자금은 140억파운드에 달하고 있다.

영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는 미국의 지원제도를 많이 도입한 결과 미국의 제도와 유사하다. 영국의 제도 중 특이할 만한 것은 Business Link제도인데, 이는 정부의 각 기관 및 정부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일괄 처리하는 창구이다. Business Link는 정부에서 출자를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만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영국 역시 엔젤과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의 주요 자금공급원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비하여 창업초기에 투자하는 비중은 떨어진다. 이들의 투자대상 중 상당 부분이 기업 매수 및 합병과 관련한 것으로 다른 나라의 벤처캐피탈 및 개인투자자와 비교할 때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이외의 전반적인 벤처기업 지원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고 잘 정리가 되어있다. 영국의 지원제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 지원요소

영국은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범위 내에서 새로 창업하는 지식 및 정보 집약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활용, 대학 및 연구소의 고급인력 활용 촉진 등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 사업부문의 지원

영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중 독특한 내용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현업에 있는 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Business Link제도이다. 이외에도 각 대학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Science Park에서는 대학과 창업 중소기업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Business Link제도

신설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1996년 말 현재 80개사가 있으며 주된 기능은 정부 각 기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중소기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정부의 지원정책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주요 출자자는 통상 산업성(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상공회의소 등이 참가하고 있다. 설립 후 3년간은 통상 산업성이 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 Science Park

Science Park는 대학 부지 안에 산학연 공동연구 단지를 만들어 연구실의 성과를 바로 산업화는 신기술 창업시스템으로 1980년대 초부터 설립되었다.

미국의 창업보육센터들이 기술 및 입지뿐만 아니라 경영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영국의 Science Park는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및 기술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설립주체는 대학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지역정부나 민간기업 재정지원 아래 설립되었다. 1996년 말 현재 1,259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고용인원은 2만3천명에 달한다.

(2) 자금부문의 지원

일본에서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연구개발 및 창업초기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제도금융권 이용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은 엔젤이 담당하여야하나 영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엔젤의 활동이 미약하다. 최근 들어 공개요건을 대폭 완화한 자본시장을 창설하는 한편 창업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금 편중을 시정하고 있다.

(가) 벤처캐피탈

영국의 벤처캐피탈은 미국의 벤처캐피탈 성장에 자극받아 80년대 초반부터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투자자는 연·기금, 은행, 보험회사, 일반기업 등이며 연·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은행 및 보험회사의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다. 영국의 벤처캐피탈의 특징은 자금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1994년 중 국내조달 비중은 전체 투자금액의 5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북미, 여타 EU 국가, 아시아 등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다. 투자활동 역시 국내외 기업 모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표 3-13> 영국 벤처캐피탈산업의 성장

(단위 : 억파운드)

구 분	'80	'83	'87	'90	'93	'94
벤처캐피탈 회사 수	23	69	90	122	119	114
총 투자액	-	-	10.3	13.9	14.2	20.7
총 투자기업 수	-	-	1,298	1,559	1,202	1,208

자료 : British Venture Capital Association(<http://brainstorm.co.uk>), "BVCA publications, research and press releases"

1994년 투자액 약 20억 파운드 중 국내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16억 파운드(80.4%)이고 나머지는 해외기업에 투자되었다.

(나) 엔젤

영국 내에 구성되어 있는 벤처기업과 엔젤간의 연결시스템(Matching System)인 Business Angel Network에 가입되어 있는 엔젤에 관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국 엔젤의 첨단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크지 않다. 창업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미국에 비해 소극적이다. 미국의 경우 개인 투자자의 투자자금 중 56%가 창업단계의 벤처기업에 지원되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2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¹⁴⁾

전국에 걸쳐 40여개에 달하는 Business Angel Network에는 1996년 6월 현재 총388명의 엔젤이 등록되어 있다. 이들은 '95/'96 회계연도('95.7.1~'96.6.30)에 212개 벤처기업에 총 2,221만파운드를 투자하였다.

엔젤 1인당 투자규모는 대부분 5만파운드 이하이고 1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엔젤은 전체의 10.8%를 차지하였다. 엔젤들의 투자는 75.9%가 단독투자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리드엔젤이 투자하면 그에 뒤이어 서포트 엔젤이 투자를 함으로써 5~10명이 공동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엔젤이 투자하는 업종은 매우 다양하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95/'96년중 컴퓨터, 전자, 의료, 생물공학, 통신 등 첨단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엔젤의 투자는 47개 기업에 618만 파운드로 전체의 22.2%, 투자금액 기준으로 27.8%이다.

(다)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벤처 및 중소기업이 주로 상장되었던 시장은 1980년 창설된 비상장 주식시장(Unlisted Securities Market)이다. 비상장주식시장은 매우 성공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유럽 전역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준을 단일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1부시장과의 차별화가 어려워져 1996년말 최종 폐지되었다. USM을 대체할 새로운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AIM이 1995년 6월에 만들어졌다.

AIM은 1부시장이나 USM에 비해 상장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사업설명서만

14) C. Mason & Harrison The Role of Informal and Formal Sources of Venture Capital in The Financing of Technology-Based S.MEs in the United Kingdom, 1994. p.15~18

으로도 상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벤처기업 및 기존 중소기업 등 상장기업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업종도 매우 다양하다. 1995년 6월 발족 이래 18개의 해외 기업을 포함하여 1997년 3월 현재 260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AIM 상장기업들의 1996년 경영실적은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AIM 상장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30%를 넘고 있으며, 순이익증가율은 75%에 이르고 있다. AIM이 만들어진 1995년 6월 및 7월 두 달간 거래소에 합류한 기업들의 순자산증가율은 40%에 이르고 있다.

< 표 3-14> 증권시장별 상장요건

상장기준	1부시장(Official List)	2부시장(USM)	AIM
최소공모주식(금액)	25%	10%	없음
최소주식발행총액	70만 파운드	없음	없음
제출서류	사업설명서, 재무제표	사업설명서, 재무제표	사업설명서
업력	3년	2년	없음
발행공고	전국지에 광고	전국지에 광고	없음
최소상장비용	735만 파운드	35만 파운드	미정

자료 : 중소기업청, ibid

이러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규거래소 시장과의 관계는 미국의 장외시장과 차이가 있다. 미국의 대표적 장외시장은 NASDAQ 첨단기업 산실로 통하고 있어 기업규모가 확대되어도 기업들은 계속 NASDAQ에 남아 있는데 반해 영국의 장외시장인 AIM은 정규거래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중간에 거쳐 가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미 17개 기업이 AIM에서 런던증권거래소로 옮겨갔다.

(3) 인력부문의 지원

앞서 언급한 영국 각 대학중심의 Science Park라는 벤처기업의 대학 연구결과를 이용한 사업화뿐만 아니라 이들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에 대한 벤처기업의 접근을 쉽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보조금을 매개로 한 전문 연구 인력의 중소기업 활용 및 산학협동 촉진시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연구원을 이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CBP(College-Business Partnerships), 대학이나 연구소의 개발기술을 이용한 사업화에 대하여 50%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Link 등이 있다.

2) 사업단계별 지원제도

영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중 연구개발 및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많지 않으며, 미국이나 일본의 창업보육센터 대신 Science Park가 기술 및 지식집약형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입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영관리 및 기타 서비스는 영국 전역에 위치한 Business Link에서 제공하고 있다. 연구개발 및 창업 초기사업은 일반 금융기관이나 자본시장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정책자금의 제공이나 엔젤의 자원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위한 신용보증제도(Small Firms Loan Guarantee Scheme)는 확대되고 있으나 엔젤의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엔젤 투자의 대부분은 창업 초기단계와 확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엔젤은 연구개발 및 창업단계에 주력하고 벤처캐피탈은 창업초기 및 확장단계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영국은 벤처기업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벤처기업 성장단계 중 초기부분에 뚜렷한 공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5> 기업 발전단계별 엔젤의 투자현황

성장단계	투자기업 수(개)		투자금액(천 파운드)	
	'94/'95	'95/'96	'94/'95	'95/'96
연구개발 단계	3(1.7)	6(2.8)	55(0.3)	355(1.6)
창업단계	47(27.2)	47(22.2)	5,088(31.5)	5,173(23.2)
창업 초기단계	31(17.9)	488(22.6)	1,748(11)	4,331(19.5)
확장단계	72(41.6)	81(38.2)	6,148(38.1)	6,966(31.4)
MBO/MBI	11(6.4)	15(7.1)	1,456(9)	2,685(12.1)
기 타	9(5.2)	15(7.1)	1,615(10)	2,697(12.1)
합 계	173(100)	212(100)	16,147(100)	22,207(100)

주) ()는 구성비(%)

자료 : British Venture Capital Association, ibid

벤처캐피탈회사 역시 연구개발 및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한 편이다. 기업 성장단계별 벤처캐피탈 투자활동을 살펴보면, 사업 확장 단계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3-16>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벤처캐피탈의 투자현황

성장단계	투자금액(백만 파운드)			투자건수		
	'92	'93	'94	'92	'93	'94
창업초기	82(6.6)	69(5.6)	76(4.6)	222(16.8)	236(19.4)	177(14.1)
확장기	362(28.9)	393(31.9)	480(28.8)	759(57.6)	746(61.3)	850(67.8)
MBO/MBI	807(64.5)	769(62.5)	769(62.5)	338(256)	233(19.2)	226(18)
합 계	1,251	1,231	1,668	1,319	1,215	1,256

주) ()는 구성비(%)

자료) British Venture Capital Association, ibid

영국 벤처캐피탈 활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업인수 및 합병과 관련된 경영자 매수(Management Buy Out 또는 Management Buy In)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 말 현재 경영자는 매수 투자금액의 총 7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영자 매수의 변화형태인 투자자 매수(Investor Buy Out)까지 등장하고 있다. 경영자 매수는 과거에 도산기업이나 부실기업을 구제할 때 많이 이용되었으나 '80년대 후반 경영자 매수가 경영 전략의 차원에서 성행함에 따라 벤처캐피탈이 이에 적극 참여하였다. 경영자 매수에 대한 투자는 시장의 안정성과 제품의 완성도면에서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하지만, 연구 개발 및 창업 시기에 투자한다는 벤처캐피탈 본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영국 벤처캐피탈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엔젤과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엔젤은 연구개발단계에, 벤처캐피탈은 사업화 시기에 각각 자금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 둘 모두가 기업의 성장단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3) 지원기관

미국보다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영국에서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벤처기업 지원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부문의 노력을 세제개편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 정부

미국의 벤처산업 발전에 자극받은 일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 대상 벤처기업을 가려내고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반해, 영국은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존 지원시책의 효과적 이용 촉진 등 간접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하되 지원대상 벤처기업의 선정은 민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세제지원

벤처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우대제도는 '80년대 이후 도입되기 시작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시키고 있다

① Enterprise Investment Scheme(EIS)

개인투자자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적격 중소기업의 신규 주식에 투자 하는 경우 투자액의 20%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개인투자자는 연간 10만 파운드까지 적격기업에 대한 주식투자가 가능하고, 주식취득 후 5년간 보유하고 나서 매각할 때 발행한 주식매각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주식매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각년도 주주의 통상소득에서 매각손실 만큼을 공제할 수 있다. 한편 상장주식 등의 처분에서 발생한 매각 이익을 EIS 적용을 받는 미공개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미공개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상장주식 등의 처분에서 발생한 매각이익의 과세는 연기할 수 있다.

② Venture Capital Trust(VCT)

미공개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EIS인 반면, VCT는 적격 미공개기업에 투자하는 회사형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한 세금우대제도로 1995년 세제개정 이후 도입되었다. VCT에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VCT 보통주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투자 시 투자액의 20% 세액공제, 5년간 보유한 VCT 주식 매각시 발생한 매각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 등의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③ 주식매각이익 과세연기제도

1988년 도입된 것으로 개인투자자가 상장주식 등의 처분에서 발생한 매각이익의 적격 미공개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연간 6,000파운드까지의 주식매각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20%, 25%, 40%의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된다. 주식매각이익 과세연기제도에 따르면 한계세율 40%인 고액소득자는 상장주식의 매각이익을 일정기간 동안 납세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과세가 연기된 주식매각 이익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투자된 미공개기업의 주식이 매각될 때 과세된다. 단, 재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그 시점에서 과세한다.

④ 미공개기업 주식매각손실 과세특례제도

개인투자자의 주식매각 손실을 다른 매각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는 있지만 통상소득과 합산하는 제도는 없었으나, 1980년 세제개정을 통하여 적격미공개기업 주식매각 손실을 통상소득과 합산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적격 미공개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에다 손실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절세할 수 있게 되었다.

⑤ ATM 등록기업 세금우대제도

런던증권거래소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공개기준을 대폭 완화시킨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을 1995년에 발족하였다. AIM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AIM 거래주식을 세제상 공개주식이 아닌 미공개주식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AIM 거래주식에 대하여 EIS, VCT, 주식매각이익 과세연기제도 및 주식매각손실 통상소득과 합산 등과 같은 세금우대제도가 모두 적용된다.

(나) 민간부문의 지원

각 대학에 설치된 Science Park 등을 중심으로 영국의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가추세에 있다. 민간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에 직접적 자금을 공급하는 노력들은 아직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엔젤과 벤처캐피탈회사 모두 연구개발 또는 창업단계에 있는 기업보다는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만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영국 정부에서 마련한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1995년 세법개정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아직 그 효과가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영국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특징

일본과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영국이지만 벤처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영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일본이 정부주도의 지원정책에 의존하는 반면 영국은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기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사용자 편의 도모 등과 같은 간접적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부도 연구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어떤 벤처기업을 지원할 것인가는 민간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둘째, 세제 지원대상 투자자들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원대상 벤처기업에 대한 범위를 네거티브 시스템에 의한 투자 적격 중소기업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소한 부동산 임대업이나 금융업 등은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두 나라 모두 사회 전체적으로 벤처기업의 활성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활성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벤처기업이라는 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영국은 특정 업종을 제외

한 기업을 모두 잠재적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방식을 시도하는 기업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는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일본의 제한적 정의보다는 영국의 개방적 정의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미국의 NASDAQ이 첨단관련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자본시장으로 인식되는 반면 영국의 장외주식시장인 AIM은 정규거래소 시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AIM 상장기업을 2류 기업으로 낙인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국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 영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창업초기에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 4 절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지금까지 미국, 일본 및 영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주요 지원요소별, 사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각국의 정책점 시사점¹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선진국들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여 벤처기업에 대해 별도의 일반지원제도나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 즉,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다.

다만 미국 및 영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제도는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여 벤처기업을 더 많이 지원하는 제도를 지양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더라도 주요 선진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주주나 투자자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의 창

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벤처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조달환경 및 투자환경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원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만 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까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이에 따라 각종 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한 일반지원 및 세제지원의 형태를 지양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가 중소기업청의 지원금에 민간자본을 더하여 민간 벤처캐피탈회사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에 투·융자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자금의 회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기술력만을 가진 초기의 벤처기업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기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기술력만을 가진 초기의 벤처기업은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시장의 실패를 공적 벤처캐피탈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벤처기업이 여러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큰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선진국들의 지원제도를 참고하여 중소·벤처기업이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복잡 다양한 일반지원 및 세제지원의 형태에서 벗어나 실효성이 없는 각종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선진국의 경우처럼 벤처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지원 및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15) 김진수, 김재진. 2002.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p186-188

제 4 장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제 1 절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1. **유형** **벤처기업** **특징** **및** **현재**

앞에서 살펴본 미, 일, 영 등 주요 선진국의 벤처기업의 지원제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부의 관련 부서가 많고, 관련법도 일원화 되지 못하고 제도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된 외부기관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정부, 관련 유관기관, 벤처캐피탈 등 투자가집단 등이 있다. 정부의 예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청, 과학기술처, 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이들 여러 부처들은 인·허가, 자금, 인력, 기술 등에서 각각의 법과 지원제도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많은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업 단계별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주체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 미국의 경우 창업초기단계에 엔젤 투자자와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창업초기단계에서는 벤처캐피탈로부터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둘째, 정부의 벤처지원제도가 경영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벤처비즈니스를 육성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 본연의 역할까지 규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병역특례제도에서는 지원인력에 여러 가지 운영상 제약을 두고 있으며 연구개발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인력과 시설 면에서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 경영능력의 제약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벤처비즈니스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 요소 간에 활발한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벤처비즈니스의 주요 구성요소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벤처캐피탈, 개인투자자등 투자자, 금융기관, 주식시장 등이 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벤처 비즈니스가 활발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 구성 요소 들간에 시장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확보에는 관심이 많으나 경영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조달은 활성화 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벤처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인력문제가 중요하다. 창업초기에는 연구 개발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성장기에 접어든 벤처기업인들은 마케팅, 인사, 조직 등 경영관리상의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미국은 벤처기업인들이 스톡옵션을 이용하여 기술 및 제품개발은 물론 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조달하고 있다. 스톡옵션은 기업성장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운전자본이 부족한 벤처기업에게는 부담 없이 고급 인력의 이용이 가능하다. 종업원들은 기업이 성장해야만 자신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기업 경영에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인들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인력들을 조달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에 대하여는 관심을 많이 가지나 경영관리인력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다. 스톡옵션의 활용은 정책당국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경영마인드가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유형** **벤처기업** **지원** **특징** **및** **현재**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대부분은 민간자본의 참여보다 공공부문의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근본적으로 자본이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형적인 상업적 행위이므로 이에 조달되는 자금 역시 상업적 행위에 부합되는 민간부문의 자금이 더욱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투자수익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연금 등 기금이나 금융기관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권장하고 제도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건전한 투기성 자본(예컨대 부동산투기 등)의 투자를 건전한 벤처캐피탈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처캐피탈이 이윤동기에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등 불건전한 투기성사업이 존재하는 한 민간자본은 벤처캐피탈로 동원되기 어려울 것이다. 투자사업조합제도가 198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신기술사업 금융지원법에 의거 도입되었으나 아직 민간의 장기자금을 동원한 실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각종 연금, 기금 및 보험회사 등의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또한 기존의 일부 벤처캐피탈회사의 자본금규모는 과소한 실정이다. 현행 우리나라 전문벤처캐피탈회사의 자본금규모는 한국기술진흥(181억), 한국종합기술금융(612억), 한국개발투자(210억), 한국기술금융(676)으로 늘어났으나 아직도 증가하는 벤처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한 투·융자 자금의 공급은 제약받고 있다.¹⁷⁾

3 . 기술혁신 및 이전기반의 취약

벤처기업의 활성화의 전제조건은 폭 넓은 기술혁신기반과 왕성한 연구 개발활동을 통한 장기적 경쟁력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개발의 저변이 두텁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기술개발이 많지 않은 실정이며, 과거 몇 년 동안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형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이미 선진국에서 상업화에 성공한 제품을 모방하거나 개선하여 국산화하려는 기술 이었다.¹⁸⁾

이른바 제2의 기술혁신 혹은 수입 대체적 기술혁신이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 기술성공률이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성공했을 때의 기대수익은 크지 않으며, 이미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일정 단계를 지난 것이므로 수명이 길지 못하다. 또한 이러한 모방적이고 수입 대체적인 기술혁신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선진국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이나 지적소유권의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원천기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일이다. 따라서 일본이 경험한 바와 같이 자체의 기술능력이 진보할수록 기술의존도는 점점 작아지게 되므로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¹⁹⁾ 그리고 연구소와 학교에서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사업화에는 더욱 촉진하고 장려할 때 기술개발의 명분과 국가전체적인 연구 개발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16) 강문수,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87, 8, 8, P. 77.

17) 홍성도, 벤처비즈니스, 벤처캐피탈, 한국 생산성 본부, 1997, 3, P.339

18) 김창달, 벤처비즈니스의 경영전략, 한국기술개발원, 1998

19) 이가중, 모험자본, 모험기업의 이론과 실제, 법정논고, 1996

1 . 창업단계에서의 벤처비즈니스 활성화

첫번째, 창업단계에서 벤처비즈니스를 활성화 하는 과제는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다.

장기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으로 낮추고 벤처캐피탈을 통한 간접 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⁰⁾ 그 대안으로 주식매각제한제도(Lock-up제도) 폐지를 들 수 있다.

벤처캐피탈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 요인 중 하나가 등록된 주식에 대해 매각 제한을 하는 주식매각제한(Lock-up)제도이다. 미국의 주식매각제한(Lock-up)제도의 경우 자발적 사적 계약으로 매각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매각제한 시에도 기간 등 상세한 내용이 조정 가능한 반면 한국의 주식매각제한제도는 사실상의 규제로서 모든 기업 공개 시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²¹⁾

현재 투자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1개월간 등록된 주식에 대하여 벤처캐피탈의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투자자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투자자가(현재 기관투자자의 경우 1년 이내 투자분에 대해서만 1개월간 매각 제한함.)와도 불공평하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에 목적이 있는 벤처캐피탈이 자본이득 획득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벤처캐피탈 업계뿐만 아니라 벤처생태계 전반에도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므로 주식매각제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벤처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조합의 확대 및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이 지배적 형태인 미국 벤처캐피탈과 달리 한국의 벤처캐피탈은 주식회사가 법적으로 규정된 조직형태이며, 여기에 미국식 투자조합 기금(fund)의 운영이 첨가되어 있다. 투자를 주식회사의 고유계정과 함께 투자조합 기금을 혼합 투자하게 됨으로써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중소기업청이 조합표준규약의 개

20) 김진수, 김제진. 2000. 「벤처캐피탈 지원제도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p271.

21) 김성현외. 2001. 「효율적 벤처캐피탈 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과천, 한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154.

정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조직 및 투자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는 결국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벤처캐피탈로 유입되어 창업 단계의 벤처기업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투자재원이 주로 차입금이나 자본금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자금조달에 근본적인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차입금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자기자본은 위험을 직접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벤처캐피탈은 투자기회를 선별하고 중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투자조합이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 벤처기업의 활성화

첫째, 벤처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자금지원 강화를 들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벤처캐피탈과 엔젤의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동안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가 용자 위주로 자금을 지원해 오다가 벤처캐피탈 결성을 촉진하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정부가 직접 공공펀드를 설립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형태의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와 민간벤처캐피탈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투자자금이 급격하게 유입되는 추세이다.

성장단계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기반 확충이 시급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첫째, 코스닥시장의 공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공시기능을 확충하고, 코스닥 등록심사기능을 보완하여 우량벤처기업을 발굴·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코스닥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코스닥 전용 수익증권” 또는 “코스닥 전용펀드”의 신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코스닥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즉, 종합가격 감시시스

템 구축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등록기업에 대한 공시기능 강화 등 시장관리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가의 꿈이 실현되는 코스닥 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을 유도하여 향후 거래소시장의 일정 수준까지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의 유명규격 획득업체 등 첨단 정보 통신업체, 우량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 시장 등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장단계에 있어서의 벤처비즈니스 활성화 개선방향은 산·학·연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있다. 벤처기업의 대부분이 과학·기술의 성과를 산업화하는 경우라고 볼 때, 벤처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계와 과학·기술의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학계 및 연구 계와의 연계시스템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 산학협동에는 기업 측이 대학에 자금만을 제공하는 위탁연구와 자금과 인력을 제공하는 공동연구가 있다. 현재의 산학협동은 아직 미흡한 단계라 할 수 있는 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고 산학협동에 대해 정부가 가능한 재정적 지원도 하여 산·학·연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벤처기업의 활성화

첫째로 벤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으로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에 있다. 코스닥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벤처기업 활성화의 토대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의 평판을 높이려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 등록요건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즉, 우수벤처기업 유치와 건전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잠식 등 재무내용에 관한 최소한의 필요한 등록요건을 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2001년 7월 코스닥 등록규정을 개정하여 등록요건 심사시 기술성, 시장성, 재무성 등에 관한 질적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제도를 도입된 바 있다.

아울러 퇴출제도를 강화하고 퇴출제도 운영을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운영함으로써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켜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의견 요건 및 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지연공시 등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하여 투자유의종목 지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벤처기업의 M&A활성화에 있다.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조합을 통한 자금 조달과 함께 M&A시장이 발달되어야 한다. 2000년 이후 코스닥 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회수(Exit) 방안으로 벤처기업 M&A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M&A시장의 미발달은 벤처캐피탈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M&A시장은 코스닥 등록과 함께 벤처캐피탈의 중요한 자금회수 방법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기업공개와 함께 M&A가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M&A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벤처기업의 M&A는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벤처 투자회수전략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IPO보다 더 높은 투자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M&A시장의 활성화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M&A를 시도하려는 벤처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벤처기업간 직접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벤처기업 M&A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M&A를 추진하는데 있어 법과 제도의 미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투자회수 수단으로서 M&A가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식 맞교환을 위한 현물출자방식의 법제도 정비,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검토, 벤처기업 M&A를 위한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의 활성화 등 여러 사항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적인 중개 기능이 없는 M&A가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기술거래소 등이 벤처전문 M&A기능을 갖추게 해서 M&A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4 원천 환 폐 환

첫째, 기술 및 인력측면의 발전방향이다. 벤처기업은 창업 초기의 내부 자원 부족을 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외부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개인적인 네트워크의 활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역량이 필요하다. 기술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체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의 공동협력으로 지역협력연구센터 및 기술혁신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센터 통합운영, 신규센터연계지정, 사업관리 중복시정 등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고 하겠다.

산업 자원부(한국기술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기술이전·거래·기술평가 및 사업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각 기술거래기관 및 평가 기관 간 협의회를 통하여 기술거래 정보공유, D/B 공동구축 활용, 기술평가인력 및 모델개발, 대학·연구기관·기업간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공립 대학의 기술이전 조직 법인화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인 관리 및 기업으로의 이전 촉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력지원제도 개선과 관련 휴직 및 겸임대상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의 배정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대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경영환경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생산력 강화는 벤처기업 단독으로 보다는 대기업과 협력할 때 그 효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벤처기업의 교섭력이 강화되도록 수탁기업체 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운영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철저한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셋째, 판로 확보를 통한 경영 기반 환경의 조성이라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영자는 대부분 엔지니어 출신으로 대부분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홍보와 마케팅에 관해서는 전념을 할 수가 없어 제품 판로에서 상당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판로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기반조성이 생산력강화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이를 위해서 공신력 있는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홍보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일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기업홍보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벤처산업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어느 산업분야보다 큰 공헌을 한 분야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벤처기업의 수가 2005년 12월 현재 총 9,732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유망하지 않은 벤처기업을 양산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벤처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창업초기단계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활성화와 벤처투자조합의 확대와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벤처 캐피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으로 관련법 및 체계의 일원화, 창투사의 등록요건 완화 및 공적 캐피탈 도입이 필요하며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연기금의 벤처캐피탈 투자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 개인 투자자등 출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어야 하며, 창투사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하고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벤처투자조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둘째, 성장단계에 있어서의 벤처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자금지원 강화, 산·학·연 네트워크의 활성화이다.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는 벤처캐피탈의 고유기능 수행 독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 확대, 건전한 벤처투자분위기 조성, 벤처투자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벤처 비즈니스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산·학·연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특히 첨단업종의 산업에 있어서는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개발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성숙·구조 단계에서의 벤처비즈니스 활성화 개선방향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M&A활성화에 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기반 확

충이 요구되는 성숙단계에서는 벤처기업가의 꿈이 실현되는 코스닥 시장의 획기적인 발전 유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코스닥 전용 수익증권”의 신설, 코스닥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이로써 건전한 투자 분위기가 저절로 조성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벤처투자회수 시장의 활성화는 코스닥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형성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M&A를 통한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창업투자회사에 M&A만을 전담하는 “기업 매수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넷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벤처비즈니스 활성화 개선방향으로는 기술 및 인력측면, 대기업과의 협력, 판로확보를 들 수 있다

기술력의 향상과 지식기반의 강화의 측면에서는 대학·연구소 보유첨단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촉진, 산·학·연 협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지속적으로 확충, 기술경쟁력 배양을 위한 계획 추진 등을 들 수 있으며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의 측면으로 이는 단기적으로는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 중기적으로는 부품업체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여 독자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판로개척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판로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기업제품 구매 비중을 확대하여 기업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변화하도록 지원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벤처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등 벤처산업 구성원들의 내부 능력 배양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되고 현재와 같은 벤처기업의 창업열기를 지속시켜 나가면서 성장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면 21세기에는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벤처지원정책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실제 벤처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절실한 문제점들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지는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한편으로 본연구가 정부의 벤처정책위주로 평가함에 따라 개별 벤처기업의 경영상 문제점과 산업 내에서 벤처기업의 위상 정립, 최근에 문제가 집중되고 있는 벤처기업인의 윤리 문제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점이 크다.

참고 문헌

국내문헌

- 강문수,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87.
- 김광희,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과 전망, 중소기업연구원, 1998.
- 이진주, 신기술개발과 모험자본의 역할, 기술관리, 1986.
- 김진수, 김재진,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 _____, 「벤처캐피탈 지원제도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0.
- 김성현 외, 「효율적 벤처캐피탈 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 김영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달, 벤처비즈니스의 경영전략, 한국기술개발(주), 1998.
- 박경민, LG경제연구보고서, 1997
- 성소미, “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0.
- 이가중, 모험자본, 모험기업의 이론과 실제, 법정논고, 1996.
- 이진주, 모험기업·모험자본·기술창업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84.
- 윤여경, 우리나라 벤처비즈니스와 벤처캐피탈, 기술이전, 제5권 제2호, 한국기계연구소, 1984.
- 이윤보, 한정화, 김영수, 이동주, 한·일 벤처기업 비교연구, 한국벤처연구소, 2001.
- 장홍순 외, 한국벤처산업발전사Ⅱ, 아르케, 2006.
- 중소기업청, 「벤처백서」. 대전, 한국: 중소기업청, 2000.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 2005년도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 2005.
- 홍성도, 벤처비즈니스, 벤처캐피탈, 한국 생산성 본부, 1997.

외국문헌

- A.C. Cooper, Strategic Management New Venture and Small Advisory Committee on Industrial, 1979, Washington, D.C. : U.S. British Venture Capital Association, “2000 Report on Investment Activity,” 2001.
- Bollinger, L.Hope, K. and Utterback, J.M,” A review of Literature and Hypotheses on New technology Based Firms”, 「Research Policy」, Vol.12, 1983.
- C. Mason & Harrison The Role of Informal and Formal Sources of Venture Capital in The Financing of Technology-Based SMEs in the United Kingdom, 1994.
- Johnson, Chalmers.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NVCA, 2000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Yearbook*, 2000.
- NVCA. 1999.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Yearbook, 1999」. Arlington, Virginia: NVCA. < <http://www.nvca.org/> >.
- OECD, Government Programmes for Venture Capital, Paris, 1996
- PriceWaterHouseCoopers, *The Economic Impact of Venture Capital in the UK : Venture Backed Companies Provide a massive impetus to the economic performance and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UK* 1999.
- Terkel, M, Integrative Management, Innovation and New Venturing, Elsevier, Amstrdam, 1990
- Timmons, J., New Venture Creation, IRWIN, Boston, 1990
- Roberts, E.B., “New Venture for Corporate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1980.
- SME, “Small and Medium Statistics for the UK 2000,” 2001.
- UK National Statistics, “Annual Abstract of Statistics,” 2002.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mall Business Economic Indicators* 2000, 2001.
- 日本 中小企業廳, 2002年版 中小企業白書, 2002.

ABSTRACT

A Study on Small & Medium Business Supporting Policy Systems for Venture Business

Lee, Sang-Ho
Major in Digital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Digital Small
and Medium Business Management
Hansung University

Nowadays, it is very important to concentrate on venture business in fostering depressed economies. this is the international economic activities are changed trend around an intelligence based economy that considers the importance of production, distribution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In advent of venture company After IMF, for the recovery of Korean economy, which has been in a regression since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acknowledgement of the importance of fostering the venture company is spreading through out the society.

This study involves the arrangement of domestic and foreign supporting systems for venture business.

It aims to present various problems and effective development direction for future improvement.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

First, Establishment of fundamental direction of policy to activate the venture company in Starting step.

For this, it is abovly to foster Venture Capital and Venture investment partnership. to foster venture capital market, it is abovely to unify relation law and system institutionally and need to introduce a public capital. to support fundings, it is necessary for pensions and funds to be participated in venture capital partnerships.
and it is for angel investor to strengthen tax-law benefit. it will grant a starting investment partnerships role of R&D activity supported and it must be foster venture capital partnerships in the Authorities prearranged intervention actively.

Second,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Venture business in growth step. it should make critical mass of venture investment through a support of policy fund, an activation of Angel investment and a creation of official venture investment fund while strengthening the strategic support to focus on building infrastructure such as an expansion of capital market base, a technology development, streng thening of connection among venture incorporation, an expansion of location and human resources, a support of ability for globalizaiton, a creation of networking, and a support of purchasing by public institutes. and they should reinforce the connection of different departments regarding the supporting policy for the venture company and post business administration

Third,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Venture business in maturity step for this we should foster the KOSDAQ stock market and M&A by advancing the system of KOSDAQ stock market.

Fourth, The reinforcement of the Business ability of venture business
The reinforcement of the Business ability of venture business can be accomplished developing of technology and strengthening of intelligence base through the cooperation of industry, school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the establishment of supporting policy to access skillful human resources by educating specialized human resourc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enter are needed and the establishment of

horizontal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conglomerates.

This study is to carefully examine the problems of the venture business through a support systems of the advanced countries. It is to present the desirable policy to raise venture business adequate to foster depressed economy in Korea.